

2000年度  
行政監査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都市管理局

日 時 2000年 6月28日(水) 10時00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10時00分 開議)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 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14일은 대통령께서 실로 55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여 반쪽과 질서에서 벗어나 이해와 협력의 시대에 서서 통일을 향한 합의문을 이끌어낸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개혁의 관리자의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아직도 국민 모두의 마음이 설레이는 듯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입지와 판단이 중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남북정상회담을 오래토록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일입니다만 연례행사처럼 장마가 찾아와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종로구 관내 위험 축대와 위험 건축물, 신축공사장의 절개지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에 미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재난에 미리 대처하는 이 길만이 가장 좋은 예산절감 방법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선배동

료 위원 여러분의 예리한 안목으로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로 도시관리국의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5항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河徹昇 都市管理局長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委員과 關係公務員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都市管理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住宅課長 姜仁豪

建築課長 李漢求

○委員長 吳弼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그러면 지금부터 都市管理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都市管理局長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안녕하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吳弼根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향상과 종로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委員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기에 앞서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都市計劃課長이 허리의 통증이 심해서 지금 거동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2주전부터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公園綠地課長이 지난 6월 승진을 해서 현재 여의도관리사업소장으로 진출을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석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姜仁豪 住宅課長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李漢求 建築課長을 소개합니다.

뒤에 배석한 係長들은 동시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係長님들!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 인사드리십시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0年度 主要業務 推進現況

(都市管理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吳弼根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委員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만 답변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金乙震 公園綠地課長이 2000년 6월 15일부터 서울시로 진출되었고 鄭鎮皓 住宅課長이 지방관계로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병가중인 관계로 전문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담당 주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委員長으로서 부탁드리면서 委員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吳弼根 네. 金福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답변하실 수 있는 係長님들만 계시고 나머지는 가셔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116쪽 청운동, 가회동은 '99년부터 2000년 5월 현재까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건수 급

액 징수에 대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청운동, 가회동 무허가가 발생 안됐다고 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현재 청운동과 가회동은 저희들이 적출한 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도 없습니다.

○金福同委員 상당히 종로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李炯述委員과 청운동 委員님이 모범적이시군요. 거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어서 종로구에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의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99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부과한 건수를 보면 약 520건에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를 합해서 약 524건에 7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金福同委員 그 중에서 주택이나 이런 거 가압류 처분된 건 얼마나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가압류는 대부분 소액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30만원 정도 기준해서 30만원 이상이 되면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몇 건이나 되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가압류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다음 우리 공직자가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 직원도 많이 있는데 가압류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 부과를 안했을 때 달리 뚜렷한 어떤 대처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앉아서 남의 재산을 가압류를 하지 않고 충분히 설득한다든가 가서 만나서 한번, 두

번, 열번을 가서 만나서 이러한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앞으로는 가압류를 하기 전에 가능하면 주민들을 한번 만나서 좀 설득을 해서 자진 시정하거나 과태료를 사진에 납부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그런 사례를 최대한 축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아름다운 종로, 살기 좋은 종로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현재 종로구에 서민아파트 철거 동수가 몇 개동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남아있는 서민아파트가 30개동입니다. 기 철거된 서민아파트가 동승서민아파트 18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중산아파트 2개동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는 30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점차적으로 철거 예정이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이화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입니까? 서민아파트 철거하게 되면 보상비 및 또 아파트를 줄 수 있는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현재 주지 못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고시일 이전에 그 집을 사서 입주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잘 모르거나 이래 가지고 사업시행 고시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동기가 이루어진 그러한 가구가 몇 가구 두서너 가구가 남아있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보상은 해드립니다마는 입주권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강력히 입주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현재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는 그렇게 줄 없는 사항

이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운동입니까? 거기 무슨 아파트 있죠? 청운아파트, 동승시민아파트 거기에 몇 건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라고 봅니다. 등기일자를 며칠 늦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불가 1개월 미만으로 왔다갔다 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는데 법적으로는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현재 현행 법령이나 지침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주민이 거기에 한분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는 사업시행고시일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법령이라든가 법을 잘 모르고 또 등한시하다 보니까 등기를 며칠 미루다 보니까 며칠 사이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저희들이 그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법을 걸만 보지마시고 억울하고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구제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이어서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1년 예산집행 되는 것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돼서 집행되는 게 1년에 한 6, 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시비 특별교부금 시비로 지원돼서 간주처리돼서 집행되는 게 해마다 정해있습니다라는 통상 한 14, 5억원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만그루 나무 심기, 푸른 서울 가꾸기 참 좋은 얘기죠. 심으면 될 합니까? 심어놓고 다 죽이는 나무 한그루에 7, 8천원씩 주고 사다 심어가지고 말라죽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살

려야 되는데 가서 보십시오. 빨갭게 말라죽은 것 수 없이 많습니다. 심으면 될 합니까? 공원계장님! 계십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예.

○**金福同委員** 공원 돌아다니면서 보셨어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못봤습니다.

○**金福同委員** 어디어디가 죽었습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시정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공원에서 공원녹지분야에 있어서 매일 관리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빗자루만 갖고 왔다갔다 한다고 됩니까? 공원 나무가 다 죽어있어요. 그 예산은 종로구민이 낸 혈세입니다. 한그루에 얼마씩 갖다 심었는데 다 죽입니까? 이어서 바로 코앞에 있는 제일은행 본점 앞에 가보세요. 대로변에 소나무가 빨갭게 다 죽어있는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달 전부터 봤습니다. 모양새가 됩니까?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 노릇한다고 여러분이 잘 지켜야 구청장이 빛나는 것이고 25시 구청장이 됩니까? 왔다갔다 하는 서울시민들이 보고 종로구청장을 얼마나 질책하겠어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가요? 수목 현재 고사당한 것 몇그루가 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가져오세요. 지금 한 그루에 7천원 짜리예요. 그런 것을 각별히 해서 물도 주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약 살포도 해야 되고 여기는 멀쩡하게 잘했어요. 잘 했는데 실제로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신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녹지계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모두 수목 제거할 것은 하고 다시 심을 것은 심고 해주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25.8평 정도는 한시법으로 해서 금년에 다 정상허가를 이렇게 등기를 내지 못하는 주택을 한시법으로 해서 해주기로 했죠?

왜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부분이 상당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말에 제정이 돼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했던 안보다는 상당히 조금 범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 건물의 범위가 아주 한정되어 있어서 첫번째 기준이 무허가는 제외입니다. 건축허가와 신고를 받고 건축한 건물 중에서 일단 '98년말까지 사실상 완공이 된 건축물에 한해서 이제 양성화해 줄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85㎡미만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거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야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봐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비단 건축을 신개축해서 불법건축물로 찍혀서 등기에도 기록되지 않고 재산상의 손해를 엄청 보고 있는 종로주민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허가조건을 제시했다가 불법건축물로 찍혀 가지고 그 외에도 자기네들 스스로 10년, 20년 전에 지어 가지고 살면서 등기가 없이 사는 집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고통을 헤아려서 국장님께서 시장한테나 아니면 의회에다 올려서 상위법에다 올려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터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로 인해서 불법건축물로 표기가 돼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분 중에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한번 양성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도 위원님 생각에 원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무허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것이 무허가를 전부 양성화를 하게 되다 보면 사실상 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적은 평수고 정말로 서민들의 소형 평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선처를 하도록 먼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오랫동안 불법건축물로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그러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한번 그 분들을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한시법이 적용된 '82년도에 적용해서 양성화를 해준 일이 있죠? 금년에 소규모로 해서 조금 터준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고 비단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종로5,6가동의 경우는 지금까지 장사 잘한 상업지역이 있었어요. 상업지역에 장사를 잘하고 있다가 뭘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어 가지고 재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니깐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있다, 주차장이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장사 잘한 집에 갑자기 종로구청에서 이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까다롭게 옛날 수십년 동안 상업하던 것을 다시 재허가를 내라고 하니깐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불법이 안됐다가 이제 와서 주차장 법이라든가 옥외 뒤편을 다시 고쳤다가 해서 불법건축물이 되면 허가가 안나갑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어떤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 기준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영업을 하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무허가가 발생해서 불법 위법건축물로 표기된 시점 이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신설할 때는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동일한 사업이죠. 그 사업을 그 번지 내에서 그 집에서 10년 이상 하고 그 건물이 지어진 지 20년 되는데 20년 동안 아무런 일 없

다 다시 허가를 갱신하는데 적혀서 안된다 그러고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이어서 종로 5,6가동은 2평, 3평 심지어는 한두 평 적발된 건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약 3,000세대에서 1,500세대가 건축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사람 죄 지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1평, 2평 적발됐다고 해서 건수를 많이 잡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이런 정도는 어느 기간에 이번 기간에 해소를 시켜 주십시오. 그 외에 신발생하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되어야지 1,500건 이상 되는 건수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서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 해소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좋은 말씀입니다. 10㎡미만 소형 생계형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종우 국장이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에서, 본 위원은 지역에 가서 소규모로 2평, 3평 이러한 것은 구청에서 해소를 시킨다고 그랬다 지역주민들한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습장씩 가져오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또 나왔으니 당신이 거짓말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장부를 놔두고 국장님께서 사인을 다해서 이러한 것은 좀 조치하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서 정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없이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李炯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116페이지 우리 金福同委員님이 질문한 그 부분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미

준공된 이 부분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페이지 속에.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李炯述委員** 허가를 내가지고 장기 미준공된 것은 아니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종로관내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금까지 장기 미준공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장기 미준공된 게 한 190여 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미준공된 건이 100건 정도 되고 미착공된 게 한 20여 건 그 다음에 공사중인 게 70여 건 해서 90여 건은 위법사항이 없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또는 착공이 안돼서 준공이 안된 것이고 나머지 100건은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는 건물입니다.

**○李炯述委員**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금까지 장기 미준공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93년도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당초 허가보다도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전혀 종로구청이 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재판해서 고등법원에 종로구청이 패소한 일이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李炯述委員** 그 내용 속에 보면 공익에 해되지 아니하고 이웃주민들에 전혀 민원 발생이 안되는 부분은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웃집에서 불법된 부분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민원 제기가 되지 않은 부분 공익에 해되지 않는 골목 깊숙히 들어가 있는 것은 준공처리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종로구청이 패소한 일이 있어요. 고법에서 종로구청이 패소를 당했거든. 그러면 본 위원이 3대까지 의원을 하면서 동행정감사 곳곳이 건축을 가보면 거의 집들이 조금 불법된 부분이 있거든. 이웃집에 큰 피해를 안주면 장기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고 계속 건축부분에 대한 세금은 받지요? 가  
옥세를 받고 있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살  
고 있는 경우에는 받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또 준공은 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  
에게 이행강제금은 부담시키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준공처리도 원만한 경우는 법에  
큰, 원만한 것 같으면 능동적으로 너무 법에 얽매  
이지 말고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준  
공 안해주고 계속 벌금 내고 벌금도 계속 내게 하  
거든. 이래서 주민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집  
들이 대충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집이 파탄이 되어 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고 어렵고  
이러한 집들이 이러한 부분은 이웃에 피해가 전혀  
없고 조그만 부분같으면 국장께서 이 부분을 좀  
선별적으로 한번 해봐가지고 준공처리에 기여할  
뜻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시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  
론적으로는 李炯述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  
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  
면 참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현실적으로 보면 저금 위반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  
이 판단할 때 저런 정도의 위반사항은 커다란 문  
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느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  
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건물 한동이라면 저희  
들이 설사 나중에 징계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더  
라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위  
법건축물이 저희 미준공 건물이 190건에서 100  
건이 위법상태로 있는 건물입니다. 그 기준을 어  
디다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  
스럽습니다. 10cm를 저희들이 인정해주면 11cm  
가진 분도 인정해달라고 할 거고 마찬가지로 12  
cm 가지신 분도 인정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공익에 해가 되지  
않고 주변에 민원의 소지도 전혀 없는 그러한 건

물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종로관내에 주거환경개  
선지구가 몇개소가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16개소가 지정되었습니  
다마는 지금 5개소는 완료가 되고 11개소가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그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에 도로를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보상해서 도로개설  
하고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그 도로개설 하고 난 잔여부분의  
자투리 땅 부분이 20㎡ 본 위원이 전에도 구정질  
문에도 여러 번 다룬 일입니다. 20㎡라면 6평인  
데 6평에 집을 짓고 살면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  
습니다. 20㎡라는 면적이 그마저 20㎡가 길이가  
길게 폭이 한 1m50, 1m60 되는 그런 폭의 20㎡라  
는 것은 전혀 쓸 수 없는 저저거든. 이 부분을  
주거환경개선법이라는 이 특별법에 20㎡ 넘는 땅  
은 처리 못하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20㎡의 땅에다가 과연 집을 짓고 살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 판단할 때도 20㎡면 6평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용적률이 또 80%까지 적용을 받게 되면 실지로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5평 정도밖에 안되  
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  
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의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당성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가능  
한한 확대보상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  
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확대보상을 하게 되면 추가사업비가 평장  
히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  
실은 서울시에서는 저희 종로구에 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30~4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저희가 800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주거환경개  
선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확대보상을 무한

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다. 대지의 폭이 3m미만이 되어 가지고 2m미만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대지 모양상 건축하기가 어려운 대지라고 한다면 20㎡를 넘더라도 확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확대보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동작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작같은 경우는 20㎡ 규정을 대부분 거의 준수를 했는데 왜 종로구는 이렇게나 확대보상이 많느냐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다 도저히 재정이 달려 가지고 더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주지 못할 형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형편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최소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20㎡라면 집을 사각 네모진 땅이라도 사람이 기거하기 힘든데 긴 삼각형, 오각형 이런 저거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저거를 그대로 짓고 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리라고 보고 이 부분은 법, 법 해가지고 너무 법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 아름다운 종로를 가꾼다는 근본 뜻과는 괴리가 된다고 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집을 지을 때 허가를 들어온 대로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동쪽에 집을 짓고 서쪽에 집을 짓고 남쪽에 집을 짓고 올라가다 보면 막판에 6m 도로가 턱이 쳐 가지고 차가 통로가 안된다고. 원서동같은 데 가보면 건축허가 날 때에 앞으로 도로 개통되는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워서 집을 다 지었을 때 이 도로가 차가 왕래가 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지 남쪽에서 집을 짓고 서쪽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나중에 부딪치는 부분에 도로가 약 1m이상 층이 쳐버린다고. 차가 못다니니 나중에는 계단으로 해서 사람이 그 도로에 차가 안다니고 걸어가는 도로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것이 현재 원서동 같은 경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지역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국장께서는 그러한 기 공사

가 완료된 지역에 도로가 완전히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지 답을 해주시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원서동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돌아봤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가 워낙 경사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집을 지을 때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로를 개설해놓고 집을 건축허가를 해주면 이러한 상황은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16개 지구 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고 이게 당초 출발할 때 '89~'99년까지 10년 간 한시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은 대부분 '95년 이전에 수립됐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시행된 거는 '97년경부터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 당시 사실상 사업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16개 지구가 있는데 어느 한 지구의 터파기부터 해나가게 되면 나머지 늦어지는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李炯述委員 局長님! 이거 주거환경개선법이죠? 이게 개선법이지 개악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주거환경개선을 시키겠다고 틀을 잡아놓고 그 지역을 다시 달동네로 만든다는 것은 이견 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비율이 종로가 제일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도로 뚫을 수 있는 예산을 한몫 달라고 그래서 어걸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소극적으로 예산을, 도로 뚫을 돈을 한몫 받아서 도로를 뚫으면 될텐데 서울시에서는 조그만한 돈을 가져오니까 집을 짓고 또 받아오고 하다 보니까 온 동네가 10년 동안 집을

짓고 나니까 달동네가 되고 만다. 이거 공무원들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느끼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委員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1년에 60~100억 이상씩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사실 많은 액수를 지원받아 왔기 때문에 16개 지구의 도로개설을 1년에 완공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려면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000억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약 800억을 동시에 받아와야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局長님! 앞으로 종로구 행정은 서울시장하고 답판을 짓더라도 서울시 주택을 개선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이 망가지는 걸 고려한다면 답판을 지어서 분기별로 어느 금액을 받아 가지고 도로도 내고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차도 왕래가 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주거환경개선을 시켰다 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말합니다. 저희 종로관내에 산책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 관내 공원은 49개소가 있습니다만 산책로의 숫자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서면으로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그러니까 특히 종로는 공원이 인왕산, 북한산 밑으로 해가지고 평창동, 삼청공원 해가지고 아침 일찍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산책을 합니다. 내가 새벽 일찍 어느 공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 공원 안 산책하는 데는 시멘트 포장 같은 거 하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람이 산책하는 도로는 되도록이면 흙을 밟고 다니려고 하지 거기에다 시멘트포장을 다 해놓으면 좋지않거든. 시멘트 포장을 다 해놨더라도. 종로구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산책로에 시멘트포장을 왜 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도 산책로는 당연히 흙

이나 돌이 깔려있어야 더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시멘트포장을 하게 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런데 局長님! 이것은 산 속의 산책로에 시멘트 포장하는 거 하고 그대로 흙을 밟고 가는 거 하고 局長님은 어느 곳을 택할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도 당연히 흙과 돌이 있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시 길이 침하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안전문제 때문에 시멘트 포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李炯述委員 어떻게 간에 앞으로 종로관내 산책로 시멘트포장을 할 때는 관계공무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합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시멘트포장을 하는 게 좋은지,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흙바닥이 좋은지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종로가 100년, 200년 후에 많은 분들이 종로 가꾸는 데 정말 신경을 썼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꼭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李炯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玄壽漢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한시법이라고 그랬는데 '99년도 12월 말로 끝난 걸로 아는데 누군가 또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니까 2000년 6월까지라고 그래요?

○住宅課長 姜仁豪 2004년입니다.

○玄壽漢委員 10년 지나지 않았어요?

○住宅課長 姜仁豪 지났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2004년 12월 말까지

○玄壽漢委員 그놈의 악법을 왜 또 연장을 해?

○住宅課長 姜仁豪 여러 가지로 지금 소방도로나 도로 이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기해서

○玄壽漢委員 지금 행촌동, 명륜동, 창신동 주거 환경한 거 있잖아요. 10년 이내에 다시 재개발해야 한다고. 주차장도 없구 말이야. 이게 2000년?

○住宅課長 姜仁豪 2004년까지입니다.

○玄壽漢委員 큰일 날뻔 했네. 됐습니다. 그 다음 창신동 성곽도로 밑 부분에 지금 시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해서 지금 주택 철거 다했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공원녹지 조성을 할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2001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래서 조성계획이 상당히 층이 저 있는데 그걸 그냥 깔아뭉개고 흙을 부어 가지고 자연상태로 공원조성을 할거냐? 창신2동이 길은 좁고 주차난은 엄청나게 심하거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그 밑에다 주택가에 있는 도로 1~3층을 주차장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다 녹지조성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녹지조성이 언제까지 될 건지 여쭙보는 겁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2001년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2002년 6월 30일까지 낙산공원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선 10년 넘은 거 보상을 하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평창동 285번지 거기가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천호동에서 성북동으로 해서 평창동을 거쳐서 불광동으로 해서 서부전선으로 나가는 군사도로를 계획해 가지고 도시계획 그어놓은 지가 거의 30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평창동 285번지 일대만 도시계획선이 서있고 우리 신영동이나 구기동으로 나가는 거는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유일하게 285번지 그 일대만 광장으로 남아 있더라구. 그래서 '98년도인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 도시계획선을 취하해달라. 필요없다 그랬더니 존치해야 된다 라는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

걸 좀 어떻게 도시계획선 취소라든가 존치 여부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긴 왜냐하면 집들이 옛날 토담집들이에요. 돌담집. 진흙 가지고 지은 집들이거든. 이게 동장 재량으로 대수선 허가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돼요. 집이 넓으니까 전세 같은 것도 안 들어와요. 이걸 좀 어떻게 뭔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 구에서 안되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도시계획선이 타당한지 아닌지 뭐가 결정이 돼야할 거 아닌가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말까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검토를 합니다.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보상을 다 해주려면 10년 이상된게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또 주민 민원도 많고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도 떨어지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동 285번지 부분은 폭 25m 이상의 도로에 연계되는 부분 같은데 이걸 서울시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다른 계획선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집을 다 지었는데 유일하게 그것만 광장으로 딱 묶여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다 건의를 했는데 유효하다, 필요하더라는 뭐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답변이 없어요. 그것을 이번에 신경써서서 평창동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玄壽漢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河徹昇 都市管理局長과 課長님 그리고 구청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대한매일 28면 기사를 보니까 도봉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과하고 징수과에 격려하

고 박수를 치면서 선물까지 전달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우리 종로구의회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빈틈없이 행정에 만전을 기한다면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어렵게 서로 마음상해 가면서 감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河徹昇局長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감사하는데 매일 얼굴 붉히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도봉구는 25개 구청에서 '98년도에는 26억을 징수해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 있고 또 작년도에는 850억이란 세입실적을 올려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거 아시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구정질문을 하던서의 문제입니다만 상세계획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상세계획 지구지정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96년 6월에 되었습니다.

○宣相善委員 몇 개 지역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4개 구역입니다.

○宣相善委員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용역비가 5억 7,000이고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가 추가되면서

○宣相善委員 5억 7,000이 아니고 5억 3,370만원인 것 같은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5억 7,000 중에서 실제로 계약 체결된 게 5억 3,000입니다.

○宣相善委員 교남, 무악동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9,500만원 들어갔습니다.

○宣相善委員 그 중에서 지금 미집행 금액이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宣相善委員 전액 용역비로 다 집행됐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닙니다. 일부 남아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얼마 남았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1,000만원 남았습니다.

○宣相善委員 경북궁지역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경북궁지역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럼 동대문상세구역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동대문상세계획구역은 3억 5,000 중에서 1차에 2억 4,000이 집행되었고 2차에 5억 9,000이 집행되고 현재 4,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렇습니다. 교남, 무악상세구역에 9,530만원 중에서 1차가 7,200만원 지출되었고 2차가 1,33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남아있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宣相善委員 그런데 거기는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해서 그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뭐를 남겼습니까? 물론 河徹昇局長이 당시에는 말지 않았기 때문에 '95, '96년에 이병화과장이 있으면서 그 계획에 전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張東祐課長, 현재 鄭鎭皓課長이 병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과장 세 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현 담당국장으로서는 이 상세계획이 잘됐고 이 용역비가 정말로 타당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상세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상세계획구역 관내에 계시는 議員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세계획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용역회사에서 노력한 만큼 집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거기에 집행된 예산만큼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에서 용역에 투자한 노력만큼은 집행됐다고 봅니다. 충분히 3개 구역 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다 상정이 됐고 또 자문위원회 자문도 수 차례 받으면서 사실 여러 번 심의도 받았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우리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투자한 소기의 성과를 3개 구역에서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宣相善委員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다고 생각되

면 이걸 추진하면서 예측은 했을 것 아닙니까? 참으로 어렵다. 그럼 몇 번 그리는데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등등이 부족해서 도저히 상세계획을 하는데 어렵다고 일찍 판단했다면 이와 같이 용역비를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局長님이 그때 당시 담당국장이 아니었으니까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현행 담당국장으로서는 당시 국장들 생각이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추진될 당시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구에 상세구역 지정을 추진하던 당시의 실무 공무원들도 정말로 어차피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개발할 때 개발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열정을 가지고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세계획을 추진한 것 같고 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용역기간만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리고 도시계획 절차를 한번 밟는데 최소가 6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추가되고 그 다음 상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주민들은 상세계획이 추진되면 용도지역 상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고 '96년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개발 쪽에 무게를 실었던 게 사실입니다. 도시계획 서울시 정책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낙관을 했던 것 같고 그러던 것이 정작 상세계획이 마무리단계인 '99년도부터 '98, '99년도 넘어오면서 서울시 도시계획 방안 자체가 개발을 독려하는 쪽에서 보존하는 쪽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상세계획이 벽에 부딪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 공무원들이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

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결과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해서 정말로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큰 반성과 참고자료로 삼을까 합니다.

○**宣相善委員** 철저하게 반성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앞으로 정말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5억 4,000만원이란 돈이 낭비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급기야는 교남, 무악, 경복궁 이 3개 지구는 해제를 시키고 종로구 동대문상세계획은 지금 서울시에 상정이 돼서 아까 局長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일단은 7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동대문상세계획 구역이 원래 방대한 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남은 구역도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계획대로 간다면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몇 차례 더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워낙 오래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이번엔 7월 달에 심의를 좀 받도록 해달라 해서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를 한번 일단 거쳤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일단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구의회에 상정한 상태이고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속단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자문회의 때도 주거지역에서 2단계 뛰어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가기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0%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局長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는 소위 상업지구나 준주거지역이나 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의 지금 생각은. 局長님 말씀은 준주거 정도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거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일차 자문위원회 결과가 준주거지역 정도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겠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준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宣相善委員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도 또 해지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5억 3,300만원에서 지금 집행된 게 다 되고 5,000만원 남았네요. 5,000만원 그것도 다 써버리고 그것도 해제하면 되잖아요? 이왕 버리는 거 다 버려버리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동대문구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일부 왕산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35m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준주거지역 정도로 조정됐을 때 이 경우에 주민들이 이걸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동대문상세계획이 그런 정도의 선에서 결론이 나고 주민들이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확정된다면 5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역만 어느 정도 선에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5억 투자한 이상의 가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1억 7,000만원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거까지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는데 또 그거까지도 날리게 됐어요. 왜 생각을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당시에 거기를 해제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다면 1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쓰지를 앓았어야지요. 괜히 두 용역회사만 살찌게 만들어준 겁니다. 두 용역회사에 정당한 집행이 안됐다면 그

중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요즘 말하는 본 위원이 들고 있는 몸통이 누구냐? 깃털이 누구냐 하는데 리베이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우리가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독하고 또 공사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의혹이나 잘못이 있다면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局長으로서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추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별도로 용역회사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집행됐는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시에 저희들이 최대한 정산을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고 그 내역은 委員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시간 관계상 수없이 묻고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도로개설. 이것도 역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도로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m니 5m니 뭐 이런데 원래 6m, 4m 하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폭을 보통 결정할 때 도로에 설치된 옹벽이나 기타 시설물의 폭까지 포함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 특히 승인동 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무진들도 같이 회의를 갖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승인동 거기 局長님이 한번 다녀왔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다녀왔습니다.

○宣相善委員 현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정말로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이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각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하는 시기와 공사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할 시점에서 실제로 고저 차가 심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확대보상을 안 하면 옹벽이 최소한 1m이상 쳐져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되면 확대보상도 해주어야 맞습니다. 확대보상규정에 어긋나더라도 그건 과감히 확대보상을 해서 사실 도로를 개설하는 게 가장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았는데 보상은 작년에 이루어지고 도로개설은 금년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그러한 어떤 서로 관련 직원간의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고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확대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局長님도 우리 姜仁豪課長님도 현장을 실사를 해서 정말 상당히 안되겠구나 하면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지금 도로가 도로라고 생각되십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용역 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개선고시일 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청에서 했는데 도로가 6m의 기능을 하려면 보상도 8m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옹벽이라든가 측구라든가 차도가 다닐 수 있는 길이 6m이상 나오죠. 당초에 계획 폭만 6m로 해놓으니까 옹벽 치고 측구 치고 4m 50~70 이런 문제가 여실히

○宣相善委員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처리를 못해요?

○住宅課長 姜仁豪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용역을 다시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더 보상을 해주어야 되면 더욱 더 일이 어려워지고 진행상태가 어려워지고 불투명해져서 당초에 계획 수립했던 사람들이 좀더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으면 이러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m도로도 있습니다. 4m도로는 그나마 승인등은 6m도로폭이기 때문에 차량이 2대가 교행할 수가 있고 통행 자체는 소방통행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제일로 좁은 도로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도로에 몇m 나오는지 아느냐고요?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住宅課長 姜仁豪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옹벽치고 난 것 재보니까 4m70인가 나온 걸로 봤는데요. 저 아래 교회에서 올라오는

○宣相善委員 거기 올라와서 초입에 말하는 겁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그것 옹벽 치고 난 것하고

○宣相善委員 다시 한 번 가서 재보시고요, 가장 좁은 구간이 몇m고 넓이가 몇m고 전체적인 폭이 몇m인가 한번 봐주십시오.

○住宅課長 姜仁豪 조사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가급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거기 예산이 얼마 소요되니까? 보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보상비 현황이 공사비하고도 급비는 7억 8,000 되는데요, 토목공사비가. 보상비는

○宣相善委員 토목공사에 7억 8,000이예요?

○住宅課長 姜仁豪 토목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 해서 7억 8,000

○宣相善委員 5억 8,000에서

○住宅課長 姜仁豪 5억 8,000에 관급자재가 있고 이전비가 있고 도급 그 정도 규모로

○宣相善委員 보상비가 17억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로 총연장이 몇 m인지 아십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100

○宣相善委員 250m, '99년 4월달 시작해서 2000년 4월까지 도로가 완료되는 게 당초는 '99년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늘 말하는 불포합지역이어서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보상협의를 늦어져서 이유는 많죠. 1년간 늘려서 금년 12월 31일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그쪽 구간만 변경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면서 최소한 백년은 못내다본다 하더라도 몇십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현장에 가서

○宣相善委員 다시 한 번 가서 보세요. 추후에 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도로에서 다른 도로하고 연결되면 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위험성을 대비하고, 소신을 갖고 정말로 국장님, 과장님들 현장 가서 보고 정말 이래도 되겠느냐 이것은 예산낭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확대보상을 해서 징계까지 당할 각오까지 하는 것도

○住宅課長 姜仁豪 사실상 저는 지금 현재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알고 있습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다음 물겠습니다. 감사자료 116쪽 아까 위원님께서 물었던 건데 작년도 1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이행강제금 건축과태료 부과징수 건수 등등 보면 1~4가동, 5~6가동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청운동하고 가회동은 한건도 없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1~4가동하고 5~6가동은 일단 상업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이고 그 다음 기준에 건물이 굉장히 밀집되게 붙어있다 보니까 세계형도 발생할 소지도 많고 또 상가에서 조금씩 달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宣相善委員 부과건수도 그렇지만 징수는 아주 저조하네요. 그 이유가 뭐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징수가 사실 저조한데 징수를 체납을 했을 때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가압류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라고 하는 게 아까 金福同委員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50~60만원 가지고 집 한 채에 압류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데 압류를 하고 나면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중간에서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무허가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면 청운동에도 이제 적출건수가 있네요. 가회동도 1건 늘어나고 동안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발생시기라고 하는 게 특별히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宣相善委員 아니죠. 이것은 국장님 잘못 안거죠. 건수가 없다가 1건씩, 2건씩 나타났다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니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하고 적출이 2건은 되어 있었습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그래서 자진 시정기간을 주고

○宣相善委員 앞장에 보면 가회동하고 청운동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住宅課長 姜仁豪 국장님이 무허가 발생건수를

○宣相善委員 왜 청운동하고 가회동은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잘못되었습니다.

○宣相善委員 1~4가동하고 5~6가동은 이렇게 건수가 많고 전혀 없었던 말이에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무허가 발생이 전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 단속반에 적출되거나

○宣相善委員 항측을 하는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항측이 제외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청운동 지역이 제외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운동 이쪽이 안되죠? 앞으로 항측은 이제 안한다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정적인 통고는.

○宣相善委員 하여튼 징수금액이 아주 저조합니다. 보면 7억 1,000만원에서 지금 받아야 될 것인데 강제이행금 1억 8,000밖에 징수를 못했네요. 4분의 1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불법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징수가 저거한다면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사실 압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실

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118쪽 전세보증금 용자지원 및 집행실적을 보면 '99년도가 14억 8,000만원이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금년에는 14억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대수 64세대밖에 안되네요. 지금 반밖에 안되어 있는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것이 5월까지 지원한 실적이기 때문에

○宣相善委員 지금까지 했는데 대충 비교를 하면 연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용자금액이 용자건수하고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무래도 가을, 겨울에 이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하자가 없는 한 지금 100%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이것도 아까 선배위원님이 물었던 건데 지금 우리 구에 장기미준공 된 건물이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193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거기서 '93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은 과태료 처분되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宣相善委員 142쪽 간단간단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실적 결손처리 되는 것이 11건이 있는데 왜 이것을 결손처리를 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으로 보냅니다.

○宣相善委員 그건 아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잘못되었느냐 이거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니죠. 저희는 정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도 이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왜 이의제기를

하느냐 하면 법원으로 가면 실제로 저희가 부과한 금액보다는 조금 덜 나옵니다. 그런 경우를 바라보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다음 또 물겠습니다. 145쪽 영선계 업무처리 연번 8번에 보면 북악팔각정 시설물 보완공사라고 해서 1억 1,000이죠? 이것이 약 5~6명 정도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李漢求 建築課長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옆의 매점 설치공사입니다.

○宣相善委員 이것이 1억 1,000 약 5~6명

○建築課長 李漢求 이것은 한옥으로 지은 겁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근 한 1억 8~9,000 된다는 거 아니요? 1,800 내지 2,000만원 된다는 거요?

○住宅課長 姜仁豪 실제로 한옥은 1,500 내지 1,600 설계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평당 그렇게 먹힌다는 겁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있는 특별품셈 자체가 일반 우리 건물 짓는 것 300이다 500이다 짓는다고 하지만 한옥 자체는 3배이상 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住宅課長 姜仁豪 한국 고건축에 대한

○宣相善委員 보편적으로 보면 관급 공사가 거의가 비싸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고급빌라를 짓고 해도 그렇게 안나오는데 관공서 공사가 이렇게 비싸나 이 말입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관 공사는 설계내역을 뽑아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순수공사비에서 원래는 설계비가 평당 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낙찰해보니까 15% 떨어지고 전화해보면 3백 몇십만원씩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10페이지 구청사 민원봉사관 남녀화장실 보수공사에 2,300

만원 들어갔죠?

○**建築課長 李漢求** 예.

○**宣相善委員** 그것이 48㎡면 약 14평 되죠? 평 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150만원 정도 됩니다.

○**宣相善委員** 약 한 16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15만을 보면 사직근린공원 화장실 개축공사가 있습니다. 8,100만원 이것도 한 14평 남짓 되는데 여기 단가는 얼마예요? 약 한 550~60만원 돼요.

○**建築課長 李漢求** 그런데 사직공원은 신축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신축이 아니고

○**宣相善委員** 신축이 아니고 개축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헐고 다시 지은 겁니다. 철거비용 포함해서

○**宣相善委員** 헐고 지면 진 것은 화장실은 별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물 지으면 화장실 들어가는데 평당 단가가 뭐 이렇게 높으냐 이거죠. 관급공사가 평당단가가 높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 단가가

○**宣相善委員** 화장실에 수입 대리석을 바릅니까? 앉는 것이 비데같은 것 설치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안전장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宣相善委員** 단가가 이렇게 높다는 것만 답변하시는 겁니까? 화장실 만드는 데 이렇게 단가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개축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만드는 것은 신축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이 총괄해서 단가가 들어가는 거지 화장실 공사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아요?

○**建築課長 李漢求** 아니, 이것은 단순히 공중화장실만을 지은 거기 때문에 설비부분 이러한 것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宣相善委員** 기존에 화장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헐고 다시 지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 정화조같은 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건물만 지어서 화장실 만드는 거 아니예요?

○**建築課長 李漢求** 정화조도 증설을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정화조 양이 적어서요?

○**建築課長 李漢求** 예.

○**宣相善委員** 몇 인용으로 했나요? 정화조를 다시 했으면 그 사직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정화조를 바꾸는 겁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기존의 시설이 작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宣相善委員** 다시 정확한 산출근거 좀 주시고 21번 보세요. 창신동 공영주차장 전기공사 했는데 어떤 전기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창신동 주차장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李課長**님! 지금 감사받는데 전혀 이렇게 저거하는데 준비 안해왔어요?

○**建築課長 李漢求** 죄송합니다.

○**宣相善委員** 자료 내놓고 그냥 위원들 모아놓고 시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창신동 공영주차장 전기공사 창신동 공영주차장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어디 말하는 거예요?

○**委員長 吳弼根** 아니, 공영주차장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住宅課長 姜仁豪** 제가 이 위치를 알고 있는데 창신동 620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그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창신2동입니다. 거기 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올라가는데 우측에 아파트 한 7, 8채 주거환경개선 해서 5층, 6층, 7층 짓고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부지가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로 15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전동, 전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宣相善委員** 거기에 전기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느냐고요.

○**住宅課長 姜仁豪** 저는 그 내용은,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 **李漢求課長**님! 그 2,000만원 어떻게 들어가요? 공영주차장이 저희 동네도 있고 몇군데 있는데 전기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요?

○**建築課長 李漢求** 죄송합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宣相善委員 지금 말이요, 지금 감사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주차장 여기 자료 해놨으면 어디가 있는지 이 돈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은 알고 와야지 이것도 답변을 못하면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말해보세요.

○建築課長 李漢求 철골 주차장인데 내부에 전동 시설을 한 겁니다.

○宣相善委員 전동시설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2,000만원이 어디 돈으로 생각을 안합니까? 주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거예요. 과장님은 2,000만원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사실 공영주차장의 전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감독만 하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宣相善委員 별도로 사용내역을

○建築課長 李漢求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다음은 공원녹지과 147쪽 보십시오. '99년도 예산집행내역 8건 5억 4,000만원 아까 국장님이 공원녹지과의 예산 편성된 것이 27억 된다고 했죠? 시비로 된 것이 14억 해서 약 40 몇 억 되네요. 이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되는 곳이 공원녹지과입니다. 엄청나게 많습시다. 나무 하나에 몇 천원에서 심지어는 소나무 한그루에 300만원이 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오늘 아침에 제가 버스를 타고 왔어요. 종로4가 전매청 자리입니까? 그것 보고 무슨 공원이라고 합니까?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교통안전지대요.

○宣相善委員 거기 보니까 사과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사과나무가 지금 잎이 별정계 말라 가지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나무는 한그루에 얼마입니까? 지금 金乙震課長님이 승진해서 여의도 공원관리 소장으로 가셨죠?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보셨어요? 지금 별정계 잎이 말라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종로구에는 나무가, 이제 식재

해놓은 거예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오늘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봤습니다. 오전에 제거가 되었을 겁니다.

○宣相善委員 그것이 한그루에 얼마짜리입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宣相善委員 사과나무죠?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오늘 오전에 조치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얼마나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곳곳에 보여요. 걸핏하면 몇 천원 몇 백만원까지 있는데 관리를 안하고 심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를 잘 해야지 여기 6번항에 보면 사직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1억이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산액이 1억이 배정돼서 소요된 것이 8,600만원 되었습니다.

○宣相善委員 아까 했던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제가 물었던 것 영선 8,100만원이고 이거는 8,600만원이고 이렇게 틀립니까? 수치가 왜 틀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죄송합니다.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1과 6이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宣相善委員 이거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가 다른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부 수치가 틀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죄송합니다.

○宣相善委員 틀려요. 기준이 '99년도말로 하느냐 금년도 2월달로 하느냐 전부 달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수치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대충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위원들이. 다음 장 149쪽 3번에 보면 승인근린공원 정비공사 집행액이 8,800만원이죠?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전기공사를 4,300만원을 썼고 소나무 등 수목보식하고 기타 보수에 4,400만원 써서 8,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宣相善委員 저번에 본 위원이 거기 감독으로 해놨죠?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예, 맞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때 얼마 썼다고 총 전기공사 나무 심는데 보식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4천 얼마였죠?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4,400만원

○宣相善委員 그런데 왜 4,400만원을 다시 넣어요? 전기공사하고 전부 합해서 공원 내의 됩니까? 선라이트처럼 되는 것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도색하고 그렇게 해서 총 4,300만원인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8,800만원입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전기공사비가 4,300만원 들어갔고 공원정비하고 하는 데 4,400만원 소요되었는데 과고라라든가 분수대 이러한 것이 그래서 4,300만원 소요된 것입니다.

○宣相善委員 당시는 전기공사 내역까지 해서 4천 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했습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아닙니다.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宣相善委員 그리고 9번란에 보세요. 주택가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이것은 항시 제거하는데 몇그루 했습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7,000만원 등등 여러 군데가 있어요. 위험수목 제거하는 데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위험수목은 상반기까지 98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장마라든가 피해를 줄

○宣相善委員 어디쪽입니까? 평창동, 부암동이 많은데 그 외에 어디가 있어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삼청동과 사직동도 있고 와룡, 명륜3,4가동에도 주택가하고 대부분 산림지역 공원지역하고 녹지지역의 접경지역에 위험수목이 많이 발생합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13번에 보십시오. 소나무 가로수 식재공사 1억 5,000만원이죠? 이게 몇그루입니까? 38주죠?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예.

○宣相善委員 그러면 한그루에 얼마입니까? 300 얼마죠?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330만원 되죠.

○宣相善委員 이 비싼 나무를 꼭 심어야 되나요? 물론 좋지요. 비싼 돈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많아 가지고 그 수종은 도심에 어울리는 수목이 있을 건데 굳이 소나무를 한그루에 33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심어서 어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 정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가로수라고 선정된 것은 버드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 선택되어진 게 심어집니다. 시민이 봤을 때에 비싼 나무지만 소나무 가로수도 있어야 되겠고 은행나무 가로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우리 위원들은 나무에 일가견이 있는 朴鍾植 市民行政委員會 委員만 알고 전체가 다 문의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와 같은 나무 수종에 대해서 선정할 때도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서 하십시오. 고가품목의 나무를 그냥 마음대로 갖다 심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어디다 심는 겁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대학로부터 성대간에 해당합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식재하면서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최소한 상의를 했습니까?

○再開發1擔當主事 權永燮 '98년도에 소나무 45주 심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식재한 걸로 알았는데 2000년도에 심을 때는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겠고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委員長 吳弼根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역구의원한테 나무를 심을 때라도 연락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나무 심을 때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의원을 바보로 압니까? 나무를 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나무 심고 있는데 의원님 알고 계시나구.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의원님과 협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없기 위해서 보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50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 하셨죠?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네,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작년부터 금년까지 왕산로 등 5개 선에 하절기 가지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옆에 동절기 동안 500주, 종로 등 18개 노선 여기도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저희 관내 평창지역, 부암지역, 종로통하고 의주로 저쪽 세검정길을 포함해서 12개 노선에 전지를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이 본 위원도 보면 주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건물을 가리다 보니까 간판도 안 보이고 장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때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서울시로부터 절대 잘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맞습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나무가 자라서 가치가 전부 간판도 가리고 건물도 안 보이고 그래도 관계 없겠네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그렇지는 않고 고압선 저축이나 신호등 보호 차원에서는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여기 분명히 하절기, 동절기 가지치기한다고 했는데 치기만 하지 또 한편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죠?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강전지를 안 된다고 말씀을

○**宣相善委員** 그러면 건물을 다 가려도 괜찮습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지하구도 높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은행나무 같은 거는 더 나운데 플라타너스는 활엽수라서 정말 안 보여요. 건물 자체가 안 보이는데도 있어요. 이걸 가지치기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시의 방침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지만 슈아주기 차원에서 전지를 시행하려고 하반기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수 신축공사하고 보식공사 48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루당 얼마예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40여 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어떤 나무를 하는데 나무 한그루에 40여 만원씩 합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은행나무 20진 정도 했을 경우에 30여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보식이라고 하는 게 노선에 은행나무가 지금 20cm로 자랐을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무가 방금 말한 은행나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얼마가 되고 하는 거를 개략적으로 뽑아주세요. 어떤 나무가 얼마 정도인지. 다음 370쪽 보호판에 37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걸 말합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보호판은 처음 도로개설을 할 때 보호판이 신설이 된 형태인데 거기 노선에 걸맞게 보호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회사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형태가 주물이나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은 상이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목보다는 이런 지주대라든지 이런 보호판 기능이 도로시설물로서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한 3,000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건 작년도 거고 금년도 거 밑에 보호판 167쪽 3,500만원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먼저 말씀드렸드시피 보호판이 주물이라든가 용도가 다른

○**宣相善委員**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

다만 '99년도 보호관 370쪽하고 그 밑에 167쪽하고 차이가 얼마나 그거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도 짓하고 금년도 짓하고 3배나 차이가 나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보호관 규격이 좀 다릅니다. '98년도에 했던 규격은

○宜相善委員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자료를 해왔으니까 그 두 가지만 해줘요. 그 전에 것은 묻지 않을 테니까. 여기 수감받는 자세를 좀 보세요. 답변도 못할 거 왜 이렇게 자료는 해왔어요? 최소한 계산이나 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답변해야겠다 하고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놔야지 하지도 않을 것을 뭉클 한다고 만들어놨어요? 이 변호관은 금으로 만든 겁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98년도에 했던 것은 주물이 아니었고 2000년도에 한 것은 주물로 해서 재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宜相善委員 재질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오후시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宜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玄壽漢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간단하게 하나만 물겠습니다. '99년도에도 대수선 허가가 27건, 금년에 대수선 허가 12건이 나왔는데 대수선 허가조건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建築課長 李漢求 기둥보를 하거나 내력벽을 30m<sup>2</sup>이상 철거해서

○玄壽漢委員 기둥을?

○建築課長 李漢求 기둥보를 3개 이상 철거해서 수선하거나 그 다음 내력벽을 30m<sup>2</sup>, 올라가는 주계단을 철거하거나 했을 때 대수선을 합니다.

○玄壽漢委員 그 대수선을 부과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도 혹은 지금 동사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별거 아니겠지만 분명히 규정을 지어줘야지 토담집 같은 거 대수선하고 나니까 싹 무너져버리잖아. 그럼 다시 지어야 되거든. 그런

경우는 그 집 자체를 못 짓게 하고 건물등기까지 말소를 시키더라구.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네 기둥을 놔두고 벽을 헐어서 다시 벽돌이나 블록으로 쌓고 집을 약간 올릴 수 있는 게 대수선 허가인줄 알고 있었는데 헐고 다시 지어도 대수선 허가가 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그러니까 이게 일부분이죠. 그 일부분을 해가지고 헐고 교체하거나 하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를 다했을 때는 개축이나 재축이 됩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그래서 대수선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 폭삭 무너져버렸어요. 옛날 토담집이니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아예 건물등기까지 말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다가 평수가 작으니까 다른 어떤 것을 못 짓는다고.

○建築課長 李漢求 사실상 재해로 무너졌으면 그 규모로 지을 수 있는데 재해가 아닌 걸로 해서 무너졌을 때는 멸실처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玄壽漢委員 누구 네는 되고 누구 네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애매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建築課長 李漢求 그러니까 기둥이나 이런 걸 그냥 놔두고 일부만 교체해 가지고 벽돌을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수선을 하는데 하시다 보니까 무너지는 적도 있고 그런 거죠.

○玄壽漢委員 우리 구청에서는 동장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해라. 아까 285번지도 토담집이고 하나니까. 그런데 이것도 벽돌을 쌓으면 건물 한 채가 한 서너 평이 늘어난다구. 그러니까 어떻게 할 재간들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원망이 많은데.

○建築課長 李漢求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개축을 하면 그 상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개축이란 게 제일 위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꼭 재해에 대해서 멸실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재해가 예견돼서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도 개축에 포함하

려고 합니다.

○玄壽漢委員 건축과에서 일관성이 없고 단속하고 지도하는 공무원들도 일관성이 없으니까 내 이 자리에서 建築課長님이 대수선 이거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나가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철거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무슨 부과가 된다고 분명하게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주민이 물어보면

○建築課長 李漢求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부터 사실상 신고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것을. 신고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기준을 일정하게 처리해서 옛날같이 다르거나,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때에는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검토하는 기준이 달랐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래서 건축과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몰라도 21개 동을 다 커버하려면 인원들이 많은 거지. 왜냐하면 지금 한바퀴 돌면 웬만한 2~3층 건물의 옥상은 전부 무허가로 증축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느냐? 꼭 밤에 몰래 지어야 되느냐? 이래서 여기 애매한 게 대수선 허가라구 지금. 이걸 전부 원하는데 이게 가장자리로 벽돌 하나만 늘어나도 안 된다.

○住宅課長 姜仁豪 이게 3개 이상이 쓰러지고 교체한다거나 주요 부분, 힘을 받는 내력벽 30㎡, 10평정도 철거나 계단이나 이럴 때 대수선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수선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대수선한다든지 증축허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기존의 집을 철고 지어도 되는 겁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대지면적을 다 찾아먹은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늘린다고 그러면 증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건폐율이나 이런 게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玄壽漢委員 어느 동을 가니까 현관문을 따로 벽으로 내고 철판으로 계단을 만들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게. 그걸 증축이라고 해서 철거를 했어요. 이것이 무슨 증축이냐? 이걸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철구조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대수선 허가를 어떻게 해주는 건지 분명하게 구청 입장을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라. 무대보로 지으면 와서 철어버리고.

○建築課長 李漢求 사실 외부계단을 만들면 그게 건폐율에 산입이 되어 버리거든요.

○玄壽漢委員 그렇다고 지붕도 안 했는데? 난간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무허가라고 철거를 해버리면. 그래서 주민들이 몇 십년 전에 지은 사람들은 대지면적에다 거의 다 달아서 지어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등기부에는 건축물은 평수가 적거든요. 만약에 15평, 16평 되는데 거기에 달아서 한 30평을 쓰고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대수선하겠다. 등기부상에는 15평인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분명하게 建築課長으로서 이걸 어디까지는 괜찮다, 또 이걸 안 된다고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도 나가서 홍보를 하죠.

○建築課長 李漢求 대수선을 할 때는 면적이 안 들어간 범위에 기존에 있는 공부상의 면적입니다. 대개 건축물이 공부상에서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15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행위를 인허가 행위, 신고행위를 해준다 치더라도 공부상에 있는 것밖에 인정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한해서만 행위가 가능한데

○玄壽漢委員 그걸 철고 지어도 되는 겁니까? 대수선 허가를 받아놓고 싹 철고 다시 지어도

○建築課長 李漢求 그렇게는 안됩니다. 대수선이란 게 완전히 그렇게 됐을 때는 개축이 되는 거지요.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감사 며칠 전에 자료를 냈으면 課長들께서는 모든

자료에 대한 숙지를 하고 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후 감사 때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時까지 停會를 선포합니다.

(12時23分 會議中止)

(13時59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長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볼 적에 자료의 미비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이라고 하면 우리 종로구로 말하자면 한 5개축으로 나눈다고 하면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거고 시민국은 복지정책의 일을 주로 보게 되고 재무국은 재산관리 또 도시관리국은 지역개발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해야 하고 이렇게 분야 분야별로 맡은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것을 물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개발문제라든가 도심재개발, 환경개선지구 이러한 데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13페이지를 봐주시죠. 그 113페이지에 추진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2건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이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판단을 못하고 추진허가를 한 건가 아니면 거기에 전문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그런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거나 신고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전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무허가라고 합니다. 무허가로 건축행위를 하다가 적출이 돼서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 무허가는 현행 건축법상 정상적으로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 중에서도 추후에 무허가 건축을 해서 적출이 돼서 시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행건축법 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사후에 신고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건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사전에 사후 신고나 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사전에 허가 없이 하던 것을 적발해서 해준다? 다음 118페이지 봐주시시오. 거기에 보면 '99년도, 2000년도 5월말 우리 구 주택보급률, 전세 및 월세 가구수 현황,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액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수 밑에 자회 14회 종료통계연보 '99년도를 인용했고요 그 전세 및 월세 가구수 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95년도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95년도의 전세 및 월세 가구수 현황인데 '99년도 것으로 해서 이 보고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왜 '95년도 것을 인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 5월달까지는 어떤 숫자가 통계가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吳錦南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및 월세 가구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청 '95년도 자료를 인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세나 월세 가구수를 저희 행정력으로 해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매 5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정부에서 이 차원에서도 자료가 작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작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세가구하고 월세가구를 저희 주택과에서 정

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치 자료를.

○吳錦南委員 그러면 금년에 통계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부합해서 통계 자료가 나오겠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액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 현재 64건이고 '99년도에는 151건입니다. 저희 동에서도 전세융자금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동장님과 같이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가능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융자금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에 지금 현재 전세자가 7,466세대, 월세가 2,364세대인데 7,466세대에서 작년도에 151세대밖에 융자를 안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각 동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 이사 오는 분들한테는 홍보 부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홍보를 활성화시키고 그 분들에게 저렴한 3%의 융자 이자율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강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도 1억 4,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거기에 알파를 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액수가 금년에 서민들 주택융자금에 과연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吳錦南委員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특히 전세자금 융자가 필요한 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종로사랑지라든지 또는 통반장 회의, 동사무소 차원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케이블TV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도 조금 전세 총가구수 전·월세 가구수가 약 9,000여 가구가 넘는 가구 수 중에서 150가구가 융자지원

을 받았다면 좀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월세 전세자금 융자 지원조건이 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현재 일단 3,000만원 미만의 전세에 살아야 하고 이 기준에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더 낮았다가 금년이 3,000만원으로 올랐다가 최근에 3,500만원으로 바뀌고 과거에는 이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월세도 전세로 환산해서 3,500만원 미만만 되면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자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졌든지 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1,500cc이상 또 뭐 이런 자기 재산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홍보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배정된 14억은 연말까지 가을, 겨울에 이사가기 때문에 아마 소요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적어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0%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다면 서울시에 더 요청을 해서 종로구에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구민들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전세자금을 받는데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거주지의 계약서와 현 거주지 지금 현재 이사오는 계약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금융에 또 서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차상 쉽게 얘기하자면 전 거주지는 필요없고 계약서가 현 거주지에서 3,000만원 이하가 되면 서류의 미비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 거주지의 얼마라는 것이 있어야만 이쪽의 것하고 합쳐서 토털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심의위원회에서 절차상 밟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가 세 들어 살고자 하는 건물주의 보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옛그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보증없이 조건이 맞으면 주

택은행에 가면 신용보증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돼서 보증 세우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거주지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거주지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住宅課長 姜仁豪 예, 맞습니다.

○吳錦南委員 언제부터 개선이 되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금년부터 개선이 되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난번에 우리 동네주민을 할 때도 그런 것이 없는 줄 아는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금년 6월부터 개선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선이 되면서 함께 된 것 같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용자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현재 이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주택은행에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구청에서 회수도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개선이 되면서 저희 구청에서 회수에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난번에 회수가 안된 것이 상당히 있다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회수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주택은행하고 세입자하고의 계약 관계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수 독려 차원에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吳錦南委員 저희 구에서는 미회수금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금융회사에서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吳錦南委員 그리고 전세금을 용자해서 타 어떤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금년 들어서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쓰시는 용도는 어디에 썼든 간에 규제나 이러한 것을 추적해 가지고 그런 용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중에 일부는 용자조건에 맞으면 1,000만원을 용자해서 갚지도 않고 다른 데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은 119페이지 맨 위 상단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허가 처리내역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로부터 잘린 대지와 잘려지지 않은 대지의 건축허가 면적은 어떻게 다르게 나오니까? 건폐율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로 개설이 될 때에 도로로 잘려진 부분 건축 건폐율과 잘려지지 않은 건폐율은 어떻게

○住宅課長 姜仁豪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대지로서 20㎡이상 되면 건폐율을 7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지 도시계획선 도로가 6m도로라서 잘린 나머지는 기존 건축물 특례에 보면 도시계획에 잘린 것은 건폐율을 10분의 2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의 10분의 7에다가 10분의 2를 해서 90%까지 가능합니다.

○吳錦南委員 적은 평수에 90%를 짓는들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아까 확대보상 문제가 6평에다 집지오라는 얘기 자체가 이것 때문에 각 시에 많은 원정을 벌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7평, 10평, 20평이면 합필을 유도해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지분으로 해서 주차장도 확보해서 지어라 하고 유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게 유도하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폐율에 맞춰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얼마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대지를 여러 필지를 합필하면 50평을 대지가 생겼다 하면 70%를 지니까 35평에 용적률이 400%니까 4층 다세대로 하면 170~80평을 짓게 되고 타당성도 맞기 때문에 많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소필지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재산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예가 거의 드뭅니다. 앞으로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미준공내역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46건인데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적은 필지에는 가능한한 준공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상에 나가다 잘려진 건물이기 때문에

○住宅課長 姜仁豪 그래서 저희들은 법 자체도 폐지되어 있는 것도 많고 해서 거의가 다 준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진정이 있을 때는 현장조사해서 만약에 위법된 것을 해주게 되면 옆에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시정할 때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가능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우리 종로구에서 많은 아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 적은 평수에서 사는 그 분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민원의 해결책에 대한 도움이 되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38번 신교동 57번지 신축허가와 도로계획선 확장 및 보상시기와 보상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뿐만 아니라 또 과장님 모든 전직원분들이 한결같아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과거에 주택과장님을 찾아가서 이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설계 일체 보여주면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모의원이 가져가서 얘기하니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과연 지역에서 어떠한 꼴이겠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되고 되는 것은 분명히 되는 것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내역을 보시면 아시지만 쪽 자료를 보세요. 경위를 보면 '93년 3월 5일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3년 3월 5일날 지정이 돼서 건설교통부 제993-5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10월 20일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계획서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년-340호로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언제 나왔느냐, '95년 3월 25일날 나왔어요.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고시가 될 때는 그 도로가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도로로 잘린다는 계획선이 다 나와있을 텐데 그 후에 증축허가가 나왔습니다. 4층의 증축허가를 신청해 갖고 '95년 3월 29일날 허가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분이 건축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지구로 만들어서 건설교통부까지 고시가 난 그 도로에다가 4층으로 증축하게끔 해준 건축과장님이나 담당국장들 필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집 건물주인이 이미 허가를 난 줄 알고 구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본 위원이 가서 그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의원이 가서 하니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평당 90만원씩 해서 4,000여 만원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4,000여 만원은 잘려나간 그 부분만 보상을 한 건지 아니면 4층 전체를 한 건지는 제가 미처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미 도로가 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우리 구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이 내역을 쪽 보시면 맨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4층 5.7㎡는 1,251만 1,000원과 정화조 1조 2,050만원에 대한 보상 미협의로 서울시 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 계획라고 써졌습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를 보면 정화조하고 1,400여 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구에서 4,200만원의 보상을 주겠다고 평당 90만원 해서 4,200만원을 주겠다는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4,200만원의 우리 구 예산이 결과적으로 허가를 잘못 내줬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

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서류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는 이렇게밖에 안내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서울시 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안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행정적으 어떤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서 지면 그때 줄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住宅課長 姜仁豪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투명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주거환경지구 지정 고시가 된 것을 확인하고 증축허가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 지구 내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담당자가 충분히 검토도 못하고 숙지를 못해서 이것은 잘못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구상권 행사 지금 타구청에 가있습니다마는 제가 종로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로 상당한 민원을 파악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분들의 답변은 지금 잘려나간 대지하고 건물 지하부터 3층까지 돈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4층 증축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우리가 해줄 수 없다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구청이 잘못된 거다 허가를 안해줬으면 그 사람이 증축을 안했을 텐데 구청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구비는 아닙니다마는 시법입니다마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4층의 건물가격이 1,251만원하고 종전에 누락됐던 정화조 도로가 나면 정화조 시설 이설비가 200만원 해서 천 한 400 정도를 지급하려고 하니까 그 건물주가 아주 상당히 부당하다 이것 가지고 잘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고치고 할 수가 있느냐 현실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 계획을 해서 공탁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행정대책을 하려고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해준다 하더라도 건물주는 지금 현재 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

한 보상문제는 건물주가 우리를 당사자로 해서 현실보상을 요구하든지 사법기관의 판결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시비니까요. 저희 구비는 아닙니다마는 응당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吳錦南委員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러한 불상사가 사실 이러한 행정착오가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전 과장님이 모 동장으로 가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장님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의 앞날을 생각해서 내가 그것은 생략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안된다고 하던 것을 다른 의원이 가서 하나까 보상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할 적에는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두가 다 아마 순탄하게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어느 누구나 피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 또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이 가서 먼저 의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안되느냐 했을 때 도저히 안된다고 했으면 모의원이 왔을 적에 같이 저를 불러주셨으면 오히려 이것이 오해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은 속 빼놓고 그 의원만 데리고 이야기 해서 된다고 하나까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정말 제 마음이 아주 괴롭습니다. 괴롭고 시예산이 되었던 간에 구예산이 되었던 간에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관계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책임에 통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 120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 5월까지 주택관련 감사원 시, 구 감사 지적사항이 쪽 나와있습니다마는 구 감사에서는 미미한 점으로만 나와있고 시 감사에서는 결과는 어느 정도 조치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구나 시나 자체 감사에서 커다란 이슈는 없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감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확대보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도 감사관을 만나서 얘기했고 저희 주택과장도 감사관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확대보상 기준이 20㎡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사실 확대보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도대체 감사관들께서 생각하시기에 20㎡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느냐 확대보상이 정말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주장을 했고 시 감사관은 그러더라도 이 기준이 무너지면 그러면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확대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만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그 다음 항측과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항측 결과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면서 일반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비 가리개 정도를 보고한 거. 그러니까 항측이 워낙 진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吳錦南委員** 전세금에도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지 않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에서 조사를 소홀히 한 부분 이런 게 이번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吳錦南委員** 다음 122페이지 청운동 시민아파트 보상문제가 78% 진전이 된 걸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완결이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걸 조속히 마무리지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 담당 係長하고 직원들이 연일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승이라든지 기자아파트와는

달리 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보상에 불응할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운아파트는 주민들이 자진 철거동의를 했습니다. 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철거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의보상을 안할 경우에 달리 대안이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상당히 의미있는 게 아파트 입주권이기에 때문에 좀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곧 보상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吳錦南委員** 청운 시민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우리 종로구의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청운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청운아파트 보상은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보상을 받는 분들은 보상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비우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비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머릿회전이 빠른 분들은 미리 보상을 받고 그 돈을 다 쓴 데 활용하고 맨 마지막 보상에서 나갈 때까지 삽니다. 철거 끝날 때까지. 그럼 이것이 1년이든 2년이든 무한정 할 경우에 계속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할 때는 언제까지 비운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주고 그 분이 집을 비우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 보상을 해줬으며 보상해준 가옥은 얼마나 비어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7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받고 지금 잔류하고 있는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주율은 50%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받으면 사실 즉시 다른 장소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정말 사정이 딱해서 조금이라도 버티보

러는 그런 심리에서 계속 잔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데다 활용하고 끝까지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잔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가 파악도 하고 더이상 잔류를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폐문조치, 그 다음 단전,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주 독려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대개 시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개 어려운데 사실 그 잔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주를 시킵니다만 현실적으로 철거를 못하는 상황에서 잔류하고 있는데 억지로 그 분들의 이불보따리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설득도 하고 만나서 이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더이상 잔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보상할 때는 보상과 즉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본인들이 받고 그걸 빨리 비워주지 않는 것은 물론 도의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걸 악이용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24쪽 항공사진 적출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에 의해서 판독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내려와서 동 건축담당이 현장을 찍니다. 그래서 구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또 민원이 되면 구직원이 다시 현장을 가서 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크기보다도 더 와서 재는 분이 크게 재요. 이런 것은 우리 동네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항의도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판독해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크게 써서 올리느냐? 오히려 항공촬영에 나온 것은 옥탑에다 조그맣게 창고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실제 나와서는 더

크게 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온 직원들한테도 제가 얘기했고 우리 동네에 있는 뭐 담당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판독이 나왔을 때는 정확하다고 인정하는데 여기 보다 더 크게 써서 올리면 그 어려운 주민이 민원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들어오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나 구청 관계자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본 위원이 그대로나 올려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주택과에서 관여를 하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좀 세심하게 관여를 해주시구요 항공촬영에 나오지 않는 부분, 무허가로 있는 분이 나는 무허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그거는 동네 건축신고를 현행법에 15평까지 임의대로 신고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기존건물이 건축법에 맞아야 합니다. 기존 건물이 건폐율을 초과했다던가 도로를 침범했다던가 여러 가지가 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5평을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큰 건물들 속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사는 분이 강제이행금을 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구청 무허가에 올라있지 않으니까 나는 무허가로 올려줘라. 뭐 그 분의 잔머리가 있겠조? 그런데 동네 얘기하면 동네서도 안 된다. 구에 얘기하면 구에도 안 된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저희들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 체부동 201-2호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와서 50%의 건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옥 위에 창고 비슷하게, 강제이행금 비슷하게 여러 차례 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짓고 있는데 강제이행금 부과율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재량을 충분히 발휘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吳鎭南委員!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20분 단위로 질의하시고 또 동료위원 질의가 끝나시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崔康洵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崔康洵委員입니다. 우리 都市管理局長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우리 민원 때문에 局長님이나 住宅課長님이 며칠 간 본 위원한테 부여 가지고 미리 준비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오늘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옥외광고물 136쪽. 본 위원이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데 옥외돌출간판 허가를 안 받으면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하루에 두 번씩 오고 때에 따라서는 며칠에 한번씩 와 가지고 왜 허가를 안 받았느냐? 허가를 받아도 받았다고 얘기를 충분히 해도 그래도 못 믿어 가지고 올라 가지고 허가증을 보자는 등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가게에다 놓지 않고 집에다 놔줬다 그러면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보면 무허가 광고 허가가 '99년도에 보면 6,466건이고 무허가가 1만 1,131건이란 것은 이걸 봤을 때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우선 위원님께 저희 도시 계획과 광고물관리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결례를 범했다면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허가 옥외광고물이 총 2만 6,000건 됩니다. 허가는 6,400건, 무허가가 1만 1,000건인데 나머지 8,000건은 신고배제 건물이어서 2만 6,000건 중에서 1만 1,000건 정도가 무허가이고 1만 5,000건 정도는 적법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약 78,000건에 대

해서 부과한바 있으나 참으로 시정이 잘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광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고질적인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과태료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시정을 차근차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광고물에서 지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은행이나 그런데 앞에 가 보면 타평으로 또는 지주를 세워서 광고하는 게 지주간판입니다.

○崔康洵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한의원 건물인데 그 옥탑에다 광고를 '기'자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게 허가가 안 된다는데 전에는 종로구청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허가가 안 된다는 건데 왜 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내용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허가가 나가서 광고판을 설치했던 장소인데 지금 옥상 광고물이 다시 허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崔康洵委員 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번지를 말씀해주시면 별도로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구민회관 옆에 동진한의원 옥탑인데 원장님이 본 위원한테 수차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허가가 안 된다고 자꾸 뜯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쪽 들 어가서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고 또 입간판이 너무 난무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 국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이라든지 그 다음 전선이라든지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입간판은 명칭을 입간판이라고 부르는데 간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간판은 사실상 허가되어 있는 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입간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간판이 아니라 노상적치물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하거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 과에 통보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앞으로 장마나 태풍이 오면 그 간판이 바람에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간판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崔康洵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127쪽을 한번 봐주세요.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해놓고 밑에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맞지 않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福同委員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학교 이게 무슨 뜻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45번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거기 표에 있고 46호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金福同委員 나는 연결된 것을 영뚱하게 다른 걸 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일번지, 종로일번지에서 시정사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봐도 우리 종로거리처럼 무질서하게 간판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그만 건물에 간판이 20~30개씩 있어요. 그런 것을 아주 깨끗하고 모양새 예쁘게 한다든지 해서 하나로 한다는 이런 것을 局長님께서 착안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께서 아주 선견지

명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정말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울의 광고물 이 실태로는 도저히 2002년 월드컵하고 금년에 ASEM 정상회의에 외국손님들을 맞이할 수 없겠다 하는 판단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도시미관에 맞는 광고물로 바뀌기 위한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저희들이 돈화문로에 건물 하나를 지정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게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광고물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광고효과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적인 광고효과도 내면서 또 도시미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도 주고 있고 그 다음 시범적으로 광고물을 개선하는 그런 광고주, 건물주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무이자로 용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광고물 개선사업이 금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어서 우리 종로구에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은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작년에 7,800건에 한 4억 5,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金福同委員 못 받아들이는 것도 꽤 많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 과태료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납부를 안 했을 때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료가 없습니다.

○金福同委員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닙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런 간판을 가지고 있다가 타지역으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찾아가서 받으니까?

○金福同委員 현실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주소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과가 어렵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때는 결손처분 하시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부득이 오랫동안 소재파악이 장기간 불가능해지면 부득이 결손처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주택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가압류를 하고 그러는데 광고물에 대해서는 가압류 못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닙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5~50만원까지입니다. 대부분 불법광고물들이 소형광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원, 10만원 이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압류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50만원대에 이르는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합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해에 고지를 했을 때 들어오지 않으면 즉각 찾아가서 조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 당 해에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 사업 부실로 인해서 폐업할 수도 있고 그만 둘 수도 있고 외부로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못 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다른 간판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즉각 局長님 전걸로 해서 빨리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어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宣相善委員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종로4가에 대나무거리가 있어서 모양새가 아주 좋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고 그래서 죽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대나무가 있을 때 아주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헤쳐 버리고 사과나무를 심고 했는데 그것 역시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대나무를 파헤쳐 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사과랑도 좋았는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우선 저희들이 사과나무로 교체시킨 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었다라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지 않았을 텐데 아까 宣相善委員님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게 상태

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실수를 식재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대나무보다도 종로통에 유실수를 심음으로써 종로의 어떤 이미지를 가꿔보자는 측면에서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金福同委員** 항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땅을 팔다 물었다 팔다 물었다 해야 좋다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은가 지역 주민들이 좋은가 아니면 업자가 좋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판단에 맡기고 중요 공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局長님! 밤에 중요 공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괜찮던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저녁에 우리 공익근무자라든가 직원을 파견시켜서 단속요원으로 배치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종로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린공원이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공원이 모습 자체가 쇠퇴해지고 있고 저녁이면 불량배, 술장사, 불량자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깨끗한 신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해서. 또 새벽 4~5시쯤 가보면 신문지 및 휴지로 인해서 더러워진 게 한이 없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왕에 하시는 길에 철저하게 해서 공원관리를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치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동료위원들이 너무나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으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감사자료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吳鎭南 副議長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 대책 집행 개보수 발부 집행현황을 '99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인데 발부 건수는 11건인데 철거는 어떤 건에 대해서 7건을 했으며 고발은 어떤 건에 대해서 2건을 했으며 추인허가는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봐주기식으로 해서 추인허가를 해주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 사항은 구체적인 건축 건물 현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바로 즉시 상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좋습니다. 서면으로 이해가 잘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상이한 것은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宣相善委員과 金福同委員이 질의했습니다만 5월까지 동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해서 지금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상반기 5월까지 약 37%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4억 4,615만 6,000원이 체납됐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혼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일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단속이 돼야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서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입장에서 생계형으로 몇평씩 늘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 천만원 되는 집에 가압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끼여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과 후에 이 분들이 체납하더라도 마땅한 어떤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유일한 제재 수단이 재산 가압류입니다. 재산 가압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납부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압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만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소액에 대해서는 가

압류를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조금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납부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최대한 노력해서 납부실적이 100%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114쪽입니다. 건축물 개축 등 신고자료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마치 무악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개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이 감사자료는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나온 걸로 아는데 정말 없습니다니까? 建築課長님! 증·개축이 없어요?

○建築課長 李漢求 네.

○丁炳煥委員 증개축이 없어요?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말씀하신 '99년도 것은 동사무소에서 통계를 낸 거고요 2000년도 것은 저희 통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상은 증개축을 하고 있는데 이 통계는 안잡혀있다는 그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통계 잡힌 것은 신고받은 것에 대해서만 통계가 잡힌 것입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개축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무악동에 대수선 건이 1건이 있는데 대수선 허가를 오전에 모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수선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의 개념이 오전에도 알가알부했습니다마는 양쪽 기둥이 그대로 서있는지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완전히 철거하면 건폐율 때문에 대수선 명목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한쪽 벽만 남겨놓고 다 헐고도 그것을 대수선으로 보는 겁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대수선 범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력벽을 30m 이상 해체 수선하는 것 그 다음에 기둥 3개 이상 해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 3개 이상을 해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 3개 이상을 해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 외의 거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등을 변경하는 것 이런 사항입니다.

○**丁炳煥委員** 각 동에서 거의 대수선 신청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에 의해서 평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말로만 대수선 명목이지 실제적으로 완전철거를 하고 대수선으로 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을 앞서서 건축과에서는 대수선 명목으로 허가를 내주고 현장에 답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저희가 신고처리 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한번 나가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민원이 어떤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만 현장에 가고 대수선에 대해서 현장 한번 답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신고처리나 허가처리나 마찬가지로입니다. 현장을 방문시에는 3일 전에 통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에는 저희가 현장을 보기 때문에 위법사항

○**丁炳煥委員** 그런데 현장 봤을 때는 한쪽 벽만 일부 남겨놓고 대수선이라고 그때 준공 때 현장방문 할 때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는 전혀 대수선 신청이 되었는지 모르고 즉 말하자면 준공시에 답사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대수선의 허가가 왔을 때는 현장 한번 반드시 실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악동에 세란병원이 크게 증축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모르십니까? 그것도 허가가 안들어왔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丁炳煥委員** 허, 몇층을 증축했는데 확인한다니 우리 건축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선이 되었든 수선이 되었든지 우리 구청에 신고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이후에 증축한 것으로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이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루어지는 있는 건축행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사실상 계장전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는 과장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면적 2,000㎡가 넘어야 과장이 비로소 결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거의 계장 전결로 이루어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사실상 현장답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설계사, 건축사가 가져온 조사결과와 설계결과에 의해서 법에 맞으면 사인만 하게 되어 있는 사실 로버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저희 동네 일입니다. 이것이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증축이나 개축하면 2,000㎡이하면 계장전결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엄청난 건물인데 계장전결로서 그나마 상세지역에 접해있는 지역인데 계장전결로서 가능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일단 우리 건축법 기준이 2,000㎡까지는 계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에서 5,000㎡까지가 과장 전결이고 5,000㎡가 넘어야 국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적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다른 여론에 문제가 됐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실제로 과장이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할 수가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국장님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건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세지구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친 것을 해당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친 것입니다. 허가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물도 여기의 대수선이랄까 증개축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서 모든 것을 정확히 잘 해주셔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누락시켜놓고 이것을 모른다, 계장 전결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에 작성된 것은 증개축하고 신고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허가가 나간 건물입니다. 증개축 신고로 나간 부분이 아니고 신고의 범위를 넘어서 허가, 증개축 중에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있고 일정한 면적을 넘으면 증축허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증축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죠.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증개축 신고 수리중이고 증축은 85㎡이하까지만 신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허가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신고사항이지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몰라서 제가 그 건물을 꼬집으려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저도 그러냐고 넘어갈 사항인데 모른다고 계장 전결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이 좀 오락가락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명료하게 해줬더라면 제가 이 질문을 않죠. 자료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 동사무소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단속이 있는데 철거가 여기에는 숫자상으로 65건이나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들을 때는 7건인가 철거했다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상이한 겁니까? 철거 내용이.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117쪽에 나와있는 철거건수는 전반적인 대집행계고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철거대집행을 말씀드린 거고 뒤의 7건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된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丁炳煥委員 철거하는 것도 내용이 다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일반적으로 무허가건물 철거는 무대책 철거가 원칙입니다. 다른 절차 없이 보는 즉시 철거가 원칙인데 이미 건물이 상당한 수준 완공이 되어버렸거나 또 견고해서 철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또는 건축주에 따라서 완강하게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절차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해서 행정절차로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철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은 계고장 없이 즉시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러십니까? 그리고 117쪽 맨좌측에 적출 계가 나왔죠. '99년도 계, 2000년도 계 상단에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99년도 123건이 철거 65건, 고발 34건, 이행강제금 33건, 신고 19건 해서 123건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국장님! 정확하게 이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리고 우측으로 철거에 2000년도 적출 38건 했습니다. 철거 18건, 고발 6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 신고 7건, 진행이 6건 그러면 계가 '99년도 123건이 맞아 되고 2000년도 38건이 맞아 되는데 이것 한번 숫자를 얼마인가 봐주십시오. 우리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는 국·과장님들은 전문성을 갖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숫자가 맞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부기를 달아서 자료를 작성해드려야 되는데 한 장의 지면 내에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123건이 적출이 되었는데 이 적출 중에서 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가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마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발해놓고 나중에 철거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사실은 숫자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丁炳煥委員 아무리 중복이 되었다 해도 합계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의 모든 자료가 면밀히 검토돼 가지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수치가 이렇게 틀려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철해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리

도록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어떤 표기를 도표로 작성하다 보니까 마땅한 표기방법으로 작성 못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철거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해서 중첩이 되다보니까 명확히 설명이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고발 중에서 34건 완결됐다면 빼야 되고 어쨌든 간에 숫자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좌우 개수가 맞도록 하고 그 필요한 사항은 상세하게 별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뭘 알 것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감사자료를 말입니다 틀리게는 하지 마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맞추겠습니다.

○**丁炳煥委員**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吳錦南 副議長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위한 사전결정 검토소홀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용자 지원시 가옥주가 전세금 반환할 때는 용자금을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도 없이 대출했고 전세금의 용도사용 미회수건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건수를 아니요, 이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데

○**丁炳煥委員** 과장님, 답변하시죠.

○**住宅課長 姜仁豪** 전세자금 용자의 용도사용을 외로 쓰는 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를 할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입자가 전세금이 1,000만원이 부족해서 3,500만원 미만 대출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돈을 갖고 있으면서 돈이 연리가 싸다보니까 연 3%다 보니

까 그것을 받고 나도 좀 다른 데 쓸 수 있겠다는 서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전세금 용도로 써야 된다, 뭐 해라 이것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러한 특혜적인 용자자금이 지리로 싸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 용도처가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파악할 만한 자료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상으로 그래서 건물주가 어차피 기간 2년이니가 그때 건물주가 반환한다는 그러한 확인서를 받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어쨌든 간에 구 감사자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해준 것은 이외 사용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적발이 될 경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준공, 미필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처리와 현재까지 장기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193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96년도 공사 18건이 준공이 안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약 5년이 경과되었는데 준공을 못받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자금 사정으로 공사 중단된 게 있고 대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준공을 못받고 있는 겁니다.

○**丁炳煥委員**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5년간 중단되고 있다고요?

○**建築課長 李漢求** 중단된 것도 있고 자금 사정이 일시 중단됐다가 다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중간에 이 건축물은 대부분 소규모 주택으로 입주하고 있어 퇴거 후 위법 부분을 철거 시정하여야 하나 건축주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시정이 어렵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영세한 사람이 건축허가를 해서 어떻게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내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봐주시기 식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장기미준공 위법된 게 103건인데 그 중에서 면적 증가한 게 63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96년도 이전 게 60%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미준공 대형건축물이 아니고 주택 등 이러한 소규모로 해서 실지로는 면적이 늘어나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퇴거를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丁炳煥委員** 사전 입주한 것은 준공을 마칠 수 없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사전 입주한 것은 저희가 준공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 독려를 철저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준공을 빨리 하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인데 부과 55건에 징수 14건, 체납 30건인데 11건이 이의제기로 법원에 이송, 결손처리 이는 어떤 내용 이길래 결손처리, 법원에 우리가 패소해서 결손처리 한 겁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적에 법상으로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법원으로 넘어가서 국고로 됩니다. 만약에 판결을 받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처리하는 겁니다.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丁炳煥委員**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를

○**建築課長 李漢九** 그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우리가 부과한 것이 적정하게 부과했나 그거 가지고 다시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 분들이 법원에서 확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방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손처리하는 겁니다.

○**丁炳煥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무악약수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장마철 지나서 충분한 수질검사를 해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금년 추경예산에 1,7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그거를 반납시키다피 했습니다. 왜 그러나 우리 종로구 민이 낸 세금을 무작정 집행할 수는 없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1,7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약수를 개발해주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지역에다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되겠다 충분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답변 아까 국장님 답변은 장마철 지나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장마철 이전에 한 번 하시고 장마철 이후에도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 충분히 검증을 해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무악동에 현대아파트 가이주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 시작할 때 영세한 임대자에 대해서 올 데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가이주단지를 만들었죠? 그 가이주단지 입주 대상자는 앞으로 임대아파트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입주 대상도 아닌데 가이주단지에다 입주를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한세대가 입주를 못해 가지고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임대아파트 입주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종로구청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더니 서울시에서 반례를 해왔다고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상담까지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직접 서울시로 거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로 보내주면 입주를 가능하게 해주마 했는데 본 위원이 구청에 상담한 결과 월권행위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그냥 물러섰습니다. 엇그제 일간지 신문에 생활보호대상자도 앞으로 입주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든지 입주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일단 우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어려운 분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까지 찾아다니면서 애를 써주신 데 대하여 저희 공무원으로서 감사드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 물론 그 분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마는 민간인과 관 일단 사람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 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악 현대아파트 조합은 굉장히 큰 조합입니다. 조합이 조합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이주단지 문제는 조합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저희 구청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이주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수용하면서 가이주 단지를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큰 무악재개발 사업이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한사람은 조합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분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조합에서 당초의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이나 관이나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그 분이 법령이나 지침상으로는 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임대주택이 불가능할 경우에 조합에서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든 그냥 쫓아내든 빠른 시일 내에 이주를 시켜서 가이주단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조합에만 미루고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만 하고 계실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방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계속 조합과 대화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노력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자율과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저희 구 관청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관청에서 조합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간여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丁炳煥委員**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로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가지치기는 상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상가주인으로서 아마 상가가 잘 보이도록 원할 겁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목적은 무엇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가로수가 진북될 소지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지가 많이 퍼지게 되면 두번째는 상가건물이라든지 너무 뻗뻗하게 가지가 들어서면 상가 간판 등을 가리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적절하게 수형을 관리해주는 게 나무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나무의 성장을 예를 든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상가는 막말로 삭발식으로 가지치기를 왜 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러한 상가가 있다면 제가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마는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병들었거나 현재 어떤 가지를 유지해 가지고 나무가 생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는 곳은 일부 전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가 앞에는 삭발식으로 세 그루를 완전 삭발해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가지치기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에 맞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丁炳煥委員**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있다면 어떤 사유인지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

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많이 컸다면 그 공무원은 야단을 맞아 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했는데 상가에서 임의로 가지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규명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상가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해줬다면 그렇게 한 공무원은 야단을 맞아야 됩니다.

○**丁炳煥委員** 상가주인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이유로 가지치기를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밤에 쳐버리는 거야 누가 막겠습니까?

○**丁炳煥委員**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안하겠습니다마는 형평에 맞는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우리 19만 중로구민에게 모든 것을 형평에 맞게 업무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너무도 자료제출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 때, 저번에도 河局長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 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회의 때는 세세한 항목까지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吳弼根** 약속을 했으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몇 가지 물고자 합니다. 委員長께서도 감사자료와 또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 모두가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구청사 제1별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질의인데 '99년도 상반기하고 2000년도 상반기하고 공사단가가 오른 겁니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대동소이한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建築課長보다 잘 모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課長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세요.

○**建築課長 李漢求** 방수공사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용재료에 따라서 내역이 다릅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99년도 상반기하고 1년후 2000년 상반기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동소이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대동소이합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4번의 구청사 별관하고 18번 구청사 제2별관 옥상 방수공사하고 이견 다 우레탄방수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틀리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보수공사는 기존에 있는 철거공사가 따르기 때문에 철거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평당 단가로 한다면

○**建築課長 李漢求** 제1별관은 평당 17만원입니다. 제2별관은 16만 3,000원이구.

○**宣相善委員** 왜 차이가 납니까? 거의가 대동소이한 우레탄 방수공사이고 1년 차이인데

○**建築課長 李漢求** 철거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서 기존에 있는 걸 견어내야 하는데

○**宣相善委員** 그럼 작년이 더 비쌌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뀌었다면 모를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그러니까 방수공사를 보수공사를 하려면 기존에 있던 걸 견어내야 되는데 그런데서 조금 차이가 나구요

○**宣相善委員** 옥상이 1별관이나 2별관이나 크게 차이가 날 게 뭐가 있어요?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되어있는 저기를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다음 5번에 구청사 방  
방설비 및 보수공사인데요 이게 1,250만원이죠?  
맞죠?

○建築課長 李漢求 네.

○宣相善委員 1식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건 수냉식으로 알고 있는데 수냉식 맞죠?

○建築課長 李漢求 패키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패키지는 뭘니까? 그냥 화학약품  
으로 청소하는 겁니까? 세관이라고 했으니까 관  
을 세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관을 세척하는 거하고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수냉식, 공냉식은 관을  
세척할 필요가 없어요. 프레온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냉식에 관 세척하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품으로 처리해 가지고 하  
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식인데 몇 대를 하는 건  
지 1대를 가지고 하는 건지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서 묻는 겁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그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  
신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宣相善委員 지금 우리 구청 내 청사에 에어컨  
이 몇 대나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  
르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공냉식, 수냉식 전혀 몰라요? 하  
나도 몰라요? 다음에 대수 전부 파악해서 여기  
1식이라고 했는데 몇 대인지, 소요액이 1,256만원  
인데 정확한 내역을 주세요. 다음 명륜 어린이집  
신축공사 1억 4,200만원이지요?

○建築課長 李漢求 네.

○宣相善委員 그 다음 9번 삼청 어린이집 신축공  
사 또 있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2번 동부 여성  
문화센터 신축공사 또 있지요?

○建築課長 李漢求 네.

○宣相善委員 세 군데가 신축공사를 했어요. 그  
런데 평당 단가가 얼마정도 입니까? 각기 틀린  
데 꼭 그렇게 틀려야 되는지. 여기 명륜 어린이  
집 신축공사는 평당 약 343만원입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李漢求 네

○宣相善委員 삼청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약 60평  
인데 평당 단가가 375만원이고 또 동부 여성문화  
센터 신축공사는 238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각기 틀립니까? 동부 여성센터는 좀 다  
르다 해도 같은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는 이 명  
륜하고 삼청은 똑같은데 왜 여기는 단가가 틀려  
요? 더구나 여긴 지하가 있네요.

○建築課長 李漢求 내역을 좀 뺐다보면 규모에 따  
라서, 사용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낙찰률에 따라  
서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宣相善委員 그럼 명륜이 더 좋게 짓습니까?  
삼청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동부여성문화센터  
가 더 좋습니까? 어느 쪽이 가장 낮게 지었다고  
課長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서 평당 단가가 틀려지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  
면 지어놓고 평당 단가에 맞춰서 그만큼 잘못 지  
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住宅課長 姜仁豪 이 단가가 재료마감이나 구조  
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막상 제일 비준이  
기초 토공사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는  
평지역 같은 데는 기초공사비가 적고 삼청 같은  
데는 암반이나 토사가 섞인 거라면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우리 姜仁豪課長님의  
보조 답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여  
성센터가 토목공사 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십  
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동부여성센터 지하에  
암반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더 쉽다고 보십니  
까?

○建築課長 李漢求 동부여성센터는 지하층이 없  
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여기 삼청 어린이집 토목공  
사 하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그러는 겁니  
까?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대  
로 평당 단가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지  
하층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용재료가  
어떤 걸로 사용하느냐? 같은 면적이라도 만약에

벽들로 사용하느냐, 돌로 사용하느냐? 그 다음 바닥마감재료인 벽은 어떻게 하느냐, 바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 지하층을 파느냐, 안 파느냐? 그 다음 같은 금액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입찰을 봤을 때 낙찰률을 입찰 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달라집니다.

○宣相善委員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평당 단가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명륜이나 삼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동부여성문화센터는 238만 4,000밖에 안 되느냐

○建築課長 李漢求 거기는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사실은 내장재에 상단부분 이런 데는 나무로 깔아줘야 되는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재료를싼 걸로, 나무로 해야지 기능에 적합한데 돈이 없으니까 금액에 맞춰서 타일로 간다든지 해서

○宣相善委員 課長님! 그건 잘못된 답변이에요. 삼청이나 명륜 어린이집은 좋은 재료를 쓰고 동부는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런싼 걸로 쓸 겁니까? 나무로 해야될 거를.

○建築課長 李漢求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이미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왔습니다.

○宣相善委員 그 금액에 맞춰서입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宣相善委員 예산이 아주 적게 잡혔으면 질이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建築課長 李漢求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 재료가 달라지지요.

○宣相善委員 아니 재료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200만원 잡았으니까 2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 잡은 데는 100만원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재료를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능이 조금 미흡하다 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만원으로 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수밖에 없습

니다.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럼 뭐가 잘못됐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네요. 그거는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어디는 어떻게 지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10번 구청사 보일러 이것도 화학세관인데 보일러도 화학세관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보일러도 세척을 하구요 이게 일부 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일부를 교체 보수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공사내역을 보면 보일러 화학세관 및 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2,896만 5,000원 들어갔죠? 보수도 했죠?

○建築課長 李漢求 네.

○宣相善委員 그러면 20번 한번 보세요. 구청사 본관 난방배관 교체공사 2억 4,700만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불과 약 8개월 사이에 다시 전체 교체공사를 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구청사는 대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建築課長 李漢求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지금 보수공사예요, 아니면 교체공사예요? 여기는 배관교체공사를 했는데 이거 일부를 한 겁니까? 2억 4,700만원 들어갔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우리 구청사 전체 난방배관을 교체하려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분씩 교체를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교체할 데를 세관을 뭐 하러 했어요? 왜 돈 들여 가지고 세관교체를 바로 하나구요. 그러면 세관부분은 교체할 부분 빼놓고 한 겁니까? 우리 구청 내 어디서 어디까지 한 겁니까? 중간중간 교체할 부분들 아무 데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어디 순차적으로 해나갑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어디라고 해서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구요

○**宣相善委員** 그러면 오늘은 이쪽에, 이번에는 저쪽에 다음에는 저쪽 어디라고 하지 않고 교체하고 싶다 하는 데 합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돌아가면서 교체하고 화학세관하고 맨날 그래야겠네요? 여기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課長님 답변처럼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많겠지요.

○**建築課長 李漢求** 배관은 1년에 한번씩 운전하기 전에

○**宣相善委員**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아닙니다.

○**宣相善委員** 이렇게 화학세관을 작년도 후반기에 해놓고 7·8개월 지나서 교체하면서 2억 4,700만원을 또 했던 말이에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宣相善委員** 그럼 전체적으로 하지요. 5억 얼마 들어간다면 부분적으로 교체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한다면서요?

○**建築課長 李漢求**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닙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課長님! 어디서 어디까지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 본관 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부분적으로 다 했습니다. 저희 파도 작년에 배관이 새 가지고 교체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수가 되고 이상이 있는데는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그 교체 부분은 어디 이상이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그 부분만 교체하고 그렇습니까? 보일러 배관이 언제 해놓은 겁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보일러 화학세관 해놓고 7·8개월 후에 또 이걸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물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建築課長 李漢求** 네. 잘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公園綠地課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약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방제실적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엔 약품종류도 다르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약품종류를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부 고독성, 중독성 약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독성 농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宣相善委員** 비용이 증가가 됐다고요? 작년 예산액이 1,700만원인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작년에 7,000만원에서 금년에 1억으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宣相善委員** 작년 예산액이 7,000만원이었다구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니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宣相善委員** 그럼 독성이 약하면 살충은 잘될지 모르겠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독성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연 1회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방제실적 밑에 보면 '99년도에 1,220ha하고 현재 2000년 5월까지 238ha밖에 못했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7월중에 또 집중적인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금년도 목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하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宣相善委員**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반년이 지나갔는데요 녹음이 짙어서 모든 벌레들이 있을 걸로 아는데 흰불나방을 보면 작년도에 900ha, 2000년 5월 현재 31ha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宣相善委員** 시기적으로 많은 벌레들이 왕성하게 자랄 때인데 이럴 때 방충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게 5월 말까지입니다. 7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宣相善委員** 151쪽입니다. 공원녹지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99'2000년 5월까지 되어 있

는데 '99년도에 보면 공원녹지대 점용료가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사용한 게 있네요. 관리공단에서 사용한 것도 있구.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공원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관리공단에서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뜻으로 표기한 겁니다.

○宣相善委員 아니 구청, 관리공단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공원시설물 중에서 일부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료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한 것이고 2건은 저희 구청에서 부과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宣相善委員 점용료가 왜 작년보다도 건수가 금년이 많은데 부과액은 적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원래 면적이 감소된 요인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면적만 감소되었습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네.

○宣相善委員 얼마나 감소됐나요? 그럼 자료에 확실하게 면적이 얼마나 축소됐다고 명기를 해줘야지 안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건수는 오히려 늘었는데도 점용료는 더 낮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주십시오.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네.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2000년 5월까지 국비, 시비, 구비에 산 사업실적 현황을 보면 시비가 14건 14억 9,800만원, 또 구비가 12억 5,400만원. 그렇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宣相善委員 또 2000년도에 시비가 14억 1,300만원이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宣相善委員 또 구비가 14건에 5억 9,0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공원녹지과에 들어가

는데 시비 많이 받아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구비도 꽤 많이 들어가요. 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무슨 나무를, 이거 다 셀 수도 없어요. 어디다 다 갖다 그렇게 많이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이렇게 심는데도 나무는 거의 가꿔진 게 없어요. 느티나무 같은 것은 나무가 커서 그렇지 수목증가가 된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다 심었어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수목이 식재된 장소는 공원하고 가로외 가로수 녹지대 등에 심어집니다. 그래서 녹지같은 경우는 인왕산길에서 북악산길, 팔각정간 금지화된 장소에 기존 산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에도 많은 수량이 심어져 있습니다. 승인공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숨어서 다른 장소에 심을 정도로 자라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 가시적으로 상당히 녹지량이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宣相善委員 일부는 멸실이 돼서 옮겨야 될 정도로 되어 있다 이거죠?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교통섬이나 만들면서 회양목이나 주목이나 죽는 데도 있고 이래서 심어달라고 해도 왜 못심는 겁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동대문지역하고 종로지역하고 경계 지점의 교통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살기를 했습니다. 사실을 시인을 하고요, 도로변의 녹지대에 있는 수목을 심고 하자하고 교체해서 심고 해도 종로 여건상 인위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번복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섬이나 그러한 장소의 인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견비를 해서 보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지금 보식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 한바퀴 돌면서 조사를 해보세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예, 그러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리고 거기에 흙도 갖다 채워야 될 부분도 많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계천8가 지금 쉼스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년이 지난 모르겠어요. 10여 년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녹이 슬고 도색이 다 벗겨져서 흉한 곳이

있는데 이러한 첩스 하나도 설치 안해요. 가장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 왜 이런 쪽은 안하고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했다고 하는데 어디 갔다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정말로 몇천주를 심었는지 몇만주를 심었는지 일일이 세어볼 수도 없고 나무를 한 주에 얼마짜리를 심었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가 말라비틀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올해 3월부터 6월 20일까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작년도하고도 대비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수목을 심고 나서 그때그때 비가 내려와서 충족을 했는데 올해는 수목식재 적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심고 나서 시공회사 내지 구청에서 급수차를 동원해서 급수를 해도 한계에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하고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하자발생이 지금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시공회사 내지는 공원녹지과에서도 보식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보식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이것을 종로를 지나는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잘해놨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고가수목인 소나무로 많이 가로수를 할 겁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는 도로에는 적정하게 외국의 예도 침엽수거리도 있고 여러 형태의 가로 형태도 있는데 교통량이라든가 또는 공해에 피해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되면 소나무를 심는 종로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문화도시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고 통행인이 많든가 했을 경우에는 소나무를 심는 것은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거기에서 쌓여서 가지가 찢어진단가 하는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해가면서 그런 가로 특성에 맞게 가로수를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소나무 심는 데가 많습니다. 사직 근린공원 소나무 등 5종을 심었고 도시환경 및 조성공사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조성공사를 어디에 하는 것인데 5,559주를 식재했는데 어디다 했느냐 이겁니다.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인왕산길에서 북악산길 도로를 기준해서 좌우측에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왕산 황학정에서 북악스카이웨이길 그 주변까지 식재되어 있고 팔각정 부근에도 일부가 식재되어 있어 종로구의 인왕산길에서 북한산길의 도시환경 식재공사를 '9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단계별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학교 녹화시범사업은 어떤 거예요?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학교녹지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요청에 의한 경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가서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입니다.

**○宣相善委員** 학교에 이만한 좋은 비싼 나무를 심어줘야 됩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학교에 소나무도 심어지고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좀 삭막하다 할 경우에는 상록수도 원하고 해서 그런 공간 자체에 맞도록 식재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가 학교까지 해줘야 됩니까?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 관해서 종로구에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넓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종묘공원에도 소나무 등 10종 했는데 종묘공원에 소나무 식재한 것 봤어요. 소나무가 좋은 건 압니다마는 워낙 비싼 수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도 더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꼭 소나무로 해야 되느냐 소나무는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소나무는 방제라든가 외

부적인 피해가 없었을 경우에는 전지라든가 오히려 필요치 않기 때문에 관리상으로는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宣相善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잘 명심하시고 예산이 적소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교통섬이나 교체해야 할 첨스같은 것 일체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고쳐지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감 자세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시 평상시 상임위에서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할 때 모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네,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수없이 해놓고 정작 그때 가면 하나도 바뀌진 게 없습니다. 河徹昇 局長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자료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질의에 너무 시간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양보하고 다시 질의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봐주시고 감사자료에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 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공사이행보증금이 현금과 증권이 있습니다. 거의 증권으로 지금 현재 공사이행보증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령으로 증권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미착공도 있고 진행도 있는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현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끊을 수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보험증권으로요? 보증보험증권은 하나의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있는 거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141페이지 건축시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사전에 준공일자를 확인해서 선납으로 유도해서 받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게 건축허가서를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吳錦南委員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맡겨놓고.

○建築課長 李漢求 아니,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허가하면서 부과를 하거든요. 고지서를 끊어서 보내는데 허가서를 찾아가면 자동적으로 내는데 허가서를 찾아가지 않는

○吳錦南委員 그러면 이게 체납이 됩니까? 찾아가지 않은 것을

○建築課長 李漢求 일단 저희가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吳錦南委員 다음에 142페이지 노후건물인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선동에 목산빌딩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감사 때도 물어보면 채무관계가 있어서 어렵다 어렵다 하고 시일만 지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쯤에 철거하고 16층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143페이지요. 건축관련 감사원 시, 구 감사지적사항에서 '99년에서 2000년 5월까지 했습니다. 가회동에 위법건축물에 관해서 가회동 11-1 외 10건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이렇게 됐는데 그 조치사항이 강제이행금 부과에 '99년 8월 18일 총 부과금액이 2,8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부과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吳錦南委員 그 밑의 칸은 어떻습니까? 건축인·허가 관련, 상설 점검관련 3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建築課長 李漢求** 2년이 지난 건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취소 안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모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만 해놓고 아직 회수가 안된 회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입금이 안되어 있는 상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내릴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이것은 부과를 해서 저희가 납부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됐을 적에는 압류를 시켜놓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吳錦南委員** 사실 압류만 해놓고 그냥 그때그때만 넘어가게 되면 그분이 꼭 필요할 시기에 풀지 않겠습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겠어요?

○**建築課長 李漢求**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도 공문 보내고 현장에 독려도 보내고 했는데 그분들이 꼭 필요할 적에 내시지 일단 압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압류를 시키는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 내지 그렇지 않으면 압류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지났을 때 더 저기한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압류하면 한번으로 끝나거든요. 언제 내든지 똑같은 금액이니까 저희가 필요할 적에 행위허가를 할 적에 낸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144페이지 관내 중대형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중 위반내역별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1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해줄 수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죄송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 145페이지 영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선계 업무처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나 준공할 때 월동기에 시작해요. 꼭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 월동기에 공사가 시작되는 건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기기가 곤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보

기에 추경예산에 잡은 것도 아닐 텐데 월동기에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러한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선업무는 소관부서에서 발주까지 마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관부서에서 발주하기까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동절기에 발주해놓으면 공사 감독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선계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주부서에 조기에 발주를 해달라 그래야만이 공사도 튼튼하게 잘 되고 저희들 감독하는 영선계 입장에서도 감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발주부서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조기발주를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면 빨리 조기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되면 영선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吳錦南委員** 발주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맨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각 부서에서 시작이 됩니까? 여기 국에서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산도 발주부서에 편성되어 있고 발주까지는 소관 업무부서에서 합니다. 저희 구청사 보수라든지 배관 교체공사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발주를 하고 발주가 떨어져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저희 영선계가 나가서 감독을 마칩니다. 준공시까지.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공사를 시작할 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 공사를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꼭 참석해달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의원님들

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위험수목 제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공문으로 동사무소에서도 띄우고 전화라도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계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목제거는 비바람이 불었을 때 갑자기 나뭇가지가 꺾여 가지고 있을 때 급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나 계장님께서 신속하게 어느 지역이든지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24페이지와 116페이지 청운동, 가회동 무허가 강제이행금에 나오지 않는 항공촬영 실질적으로 항공촬영에 나오지 않는 청운동이나 삼청동, 가회동 부분은 의원님들은 편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의원님들은 아주 촬영에 나옴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민원은 전부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데 이 민원을 해결할 방법은 국장님, 과장님한테 가야 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대신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전세자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도 회의 하면 회의수당이 나옵니다. 위원회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점심도 사고 차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동장 보고 매일 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위원회가 필요한 데에는 예산을 넣어서 예산을 포함해서 그 위원회에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6페이지, 138페이지 풍치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安載弘議員, 千相旭議員, 본 議員 여러 議員님들이 시에 가서 직접 시의 도시계획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새로이 풍치지구 내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나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 구에서 풍치지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식재를 하게 되면 그 나무가 다 어디에 심겨있느냐, 어디에 심었느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해도 표시가 안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사직공원 내에 여러 가지를 식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심어놓고 보면 별표시가 안나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대학로라든지 종묘공원이라든지 보면 외부인들이 와서 많은 시위를 합니다. 이 시위를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해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망가집니다. 앞으로 시위허가를 내주는 것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시위를 하는 장소에는 어떠한 물품을 손해를 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서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가능한한 시위대에서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좀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한번 경찰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吳錦南委員 하나의 미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직공원의 소장께서 지역에 건축 어떤 공사가 있을 때 향나무라든가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주들이 이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갔으면 어쩌나 하는 구에다 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직공원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

더니 사직공원 내에 향나무도 심어주고 기타 다른 나무도 갖다 심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 나무 하나 옮겨 심는데 60여 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각 지역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각 지역에 그런 좋은 나무들이 있지 않겠는가 건축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도 우리 국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나무를 사는 것보다는 이식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예산과에 건의해서 그러한 것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지금 문화진흥과죠? 지금 진흥과 안의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 관계가 지금 현재 문화진흥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公團擔當主事 黃圭天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5%를 문화진흥과에서 조성 및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전에는 분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公團擔當主事 黃圭天 예.

○吳錦南委員 본 위원 생각은 어느 한 과로 집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과 그쪽의 과장님들이 상의해서 하나로 체육시설을 한쪽으로 몰아줘야 어느 한곳에 가서 얘기하지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설이 미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의동우체국 바로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조금 시설을 해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공문도 보냈었는데 지금까지 소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안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우리 계장님!

○公團擔當主事 黃圭天 직원이 하고 현장은 같이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수시로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했고요 그것은 예산이 마련되면 하겠

다는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동사무소에서 당면현안 이라고 해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직터널을 지나가자면 좌우로 사직동이 갈라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직터널 위쪽으로 해서 5통, 6통, 7통과의 랑데부를 할 수 있게끔 터널 위로 휨스를 높이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과거에는 다녔습니다.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이 없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입을 해서라도 이것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어떠신지

○公團擔當主事 黃圭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직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밤이면 거의 한번씩 나갑니다. 지금 옹벽 처리할 게 꽤 깁니다. 어제 밤에도 와 보니까 옹벽 처리가 10분의 1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는데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공사하는 소장이 공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옹벽 처리를 하면서도 한 7, 8m만 옹벽 처리했었어요. 그럼 옹벽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면 천천히 하지요,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수철이 돌아왔습니다. 장마철이 돌아왔어요. 과연 어떻게 할건가 주민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그 사항은 우기철 오기 전까지 상단부하고 들어간 진입로 사조참치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가 거기가 폭우가 오게되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속하게 옹벽을 하라고 몇 차례 현장 소장도 불러놓고 감독한테 지시도 해냈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재차 감독이 지금 손목을 다쳐서 한 4~5일 동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거를 좀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직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틀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주시면서도 그 대답을 못하시는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 159페이지를 보십시오. 8,618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게 사직공원 화장실 개축공사에서 8,618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입찰 수주가입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왜 돈이 줄었는가 나오입니다. 왜 8,100만원이 됐는가. 이거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뭐니까? 자료를 내놓고도 답변을 못하면 자료는 뭐하러 내셨습니까? 152페이지 보세요. 왜 줄었는지 거기에 세 가지 명목이 나와있습니다. 폐기물 감량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해서 줄어졌지 않습니까? 폐기물 감량에 따른 설계변경, 소나무 가로수 식재공사도 그렇고 세 번째 승인 근린공원 등 보수공사는 현재 여기에 자료 자체가 없어요. 여기만 나와있지 이 감사자료 자체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여러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료에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또 자료를 냈으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돈화문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廷花係長님! 거기가 걷고싶은 거리입니까? 역사탐방로 거리입니까?

○都市計劃擔當主事 李廷花 정식명칭은 서울시에 서 발주할 때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각 자치구 시범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여기의 사업목적을 읽어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의 보행권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돈화문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36억이나 되는데 전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0년 7월 말 설계가

완료되고 9월 말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고 2002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돈화문길의 역사성을 되살리고 도시성을 강화하여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차량중심의 교통문화를 인간중심의 도시로 전환하여 남북 녹지축을 연결하여 녹도를 조성하여 도심 역사문화탐방로와 연계하여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하고 난 후 정말 종로는 살기좋은 아름다운 종로가 건설되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역사탐방로를 남산에서 걷고싶은 녹도를 따라서 비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주 좋은 거리를 녹도를 따라서 오니까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서 창경원 쪽으로 이 관광객들이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순라길 아십니까?

○都市計劃擔當主事 李廷花 네,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우리 局長님! 가보셨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가봤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어떻게 생겼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당초에 조성한 목적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委員長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돈화문에서 창경궁 쪽으로 가다보면 바로 초입 우측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주변 고궁인 종묘, 창경궁, 돈화문 삼각지대에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 불량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라길 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옆의 거기를 보면 우리 종로의 공원지대에 이런 불량주택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정말 한심합니다. 좋은 길 닦아놓으면 뭐합니까? 아주 기분 좋게 왔다

가 거기를 가면서 기분이 야! 뭐 이런 데가 있나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페인트칠을 했더라구요. 어디서 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페인트칠을 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청장님도 건의를 했고 저희 녹지과에서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엔 서울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60억 정도 소요되면 그걸 다 보상하고 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委員長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여기 보니까 '99년 12월 20일~2000년 1월 20일, 4월 20일 날 시장단에게 3회 이상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불량건축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건 부시장님께도 보고가 됐습니다. 저하고 청장님이 가서 부시장님께 자료도 드리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께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사진하고 자료를 다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이런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거기는 꼭 연계해서 불량주택이 없어져야겠다 하는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2년 월드컵 안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局長님께서 중점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河徹昇局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6월 29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40分 散會)

○出席委員 9人

吳弼根 崔康洵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金以煥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住宅課長 姜仁豪  
建築課長 李漢求  
公園擔當主事 黃圭天  
都市計劃擔當主事 李廷花